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8-16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평가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plans of locality index on local
broadcasting)

배진아/주정민

2018. 12

연구기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1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평가 개선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기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책임자 : 배진아

참여연구원 : 주정민

채종훈

함희주

목 차

요 약 문	12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
1. 연구의 목표	3
2. 연구의 내용	3
제3절 연구방법	5
제2장 지역성 지수에 관한 기존 연구	6
제1절 지역성 지수의 배경과 현황	6
제2절 지역성 지수 관련 기존 연구	9
제3장 지역방송 환경 및 현황분석	1
제1절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환경	11
1. 지역방송 경영여건 악화	11
2. 지역방송 인력 감소	14
3. 자체편성 및 자체제작 저조	15
4. 프로그램 유통 비활성화	18
제4장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관련 심층인터뷰	9
제1절 조사대상 및 내용	19
1. 조사대상	19
2. 조사 내용	19
제2절 조사결과	19
1.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에 대한 결과	19

2. 방송운영 영역에 대한 결과	22
3. 기타의견	25
제5장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 평가항목 개선	62
제1절 지역성 지수 평가항목의 적정성	26
1.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	26
2. 방송운영 영역	29
3. 기타	33
제2절 지역성 지수 평가항목 개선안	36
1. 지역방송 지역성지수의 개선 방향	36
2. 지역방송 지역성지수 개선(안)의 주요 변경 내용	37
3. 지역방송 지역성지수 개선(안)	40
제6장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배점 및 측정방법	91
제1절 지역성 지수 배점 개선방안	49
1. 현행 지역성 지수 배점 구성	49
2. 현행 지역성 지수 배점의 쟁점	50
3. 지역성 지수 배점 구성의 개선안	52
제2절 지역성 지수 항목별 평가방법 개선방안	58
1. 현행 항목별 평가방법	58
2. 방송내용 및 편성영역 평가방법 개선안	60
3. 방송운영 영역 평가방법 개선안	64
제7장 결 론	69
참 고 문 헌	71

표 목 차

<표 1-1> 연구개괄	5
<표 2-1>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500점)	8
<표 2-2> 방송운영 영역(500점)	8
<표 3-1> 지역방송 매출액 추이 (2012~2017년)	1· 1
<표 3-2> 지역방송 방송사업수익 추이 (2012~2017년)	2· 1
<표 3-3> 지역방송 광고수익 추이 (2012~2017년)	3· 1
<표 3-4> 지역방송 기타사업매출액 비중 (2017년 기준)	3· 1
<표 3-5> 지역방송 종사자수 추이 (2012 ~ 2017년)	4· 1
<표 3-6> 지역방송 방송직 종사자수 추이 (2012~2017년)	5· 1
<표 3-7> 지역방송 자체편성 프로그램(TV) 시간 (2017년 기준)	6· 1
<표 3-8> 지역방송 제작원별 자체제작 프로그램(TV) 시간 (2017년 기준)	7· 1
<표 3-9> 지역방송 프로그램(HDTV) 제작비 (2017년 기준)	7· 1
<표 3-10> 지역방송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추이 (2012~2017년)	8· 1
<표 4-1>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의 개선안(정책연구반)	0· 2
<표 4-2> 방송운영 영역의 개선안(정책연구반)	3· 2
<표 5-1>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 (500점) : 현행 평가 내용 및 개선안의 비교	2· 4
<표 5-2> 방송 운영 영역 (500점) : 현행 평가 내용 및 개선안의 비교	5· 4
<표 5-3>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 개선안 (500점)	8· 4
<표 5-4> 방송 운영 영역 개선안 (500점)	8· 4
<표 6-1>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 배점 현황	9· 4
<표 6-2> 방송운영 영역 배점 현황	0· 5
<표 6-3> 방송 편성 및 내용 영역의 배점 개선안	3· 5
<표 6-4> 방송 운영 영역의 배점 개선안	5· 5
<표 6-5> 방송평가 항목을 활용하는 항목의 구성	8· 5

<표 6-6> 방송평가 항목 이외의 평가 항목의 구성	95
<표 6-7> 방송내용 및 편성영역의 측정자료 활용 방안	06
<표 6-8> 방송내용 및 편성영역의 평가 항목 및 척도 개선안	36
<표 6-9> 방송운영 영역 항목의 배점 및 활용자료 방안	46
<표 6-10> 방송운영 영역의 평가 항목 및 척도 개선안	76

요 약 문

1. 제 목

지역방송 지역성지수 평가 개선방안 연구

2. 연구의 필요성

지역성 지수는 지역방송사에 대한 기금 지원 제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정도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교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성 지수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2년간 지수를 산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지역성 지수 도입 이후 발견된 제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의 개선 필요성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지역성 지수가 지역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지역성 지수 산출을 위한 데이터 및 지수 산출 공식의 신뢰도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지역성 지수 측정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세심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지역성 지수의 타당성 확보, 신뢰도 개선, 측정상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을 통해 지역방송의 지역성 책무 구현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2016년부터 지역방송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성 지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의 평가제도 시행결과를 토대로 지역성 지수의 평가항목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방송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신규 평가 항목의 개발 및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성 지수가 지역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등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의 시행 및 평가과정을 통해 지역방송의 지역성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세부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지역성 지수에 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는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였다. 셋째는 현행 지역성 지수의 평가 항목 및 측정 방안을 검토·분석하였다. 넷째는 지역성 지수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배점 및 측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는 지역방송의 지역성 제고를 위한 지역성 지수 시행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환경

지역방송은 변화하는 방송 및 주변 미디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OTT 서비스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서비스의 등장과 확산, 모바일 미디어의 발전, 개인방송과 MCN의 높은 인기 등 방송과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지역방송의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텔레비전 시청 행태의 변화 역시 지역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로 인해 방송 미디어의 위상은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도 예전 같지 않다. 지역방송 경영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청행태의 변화로 인해 방송의 광고 매체로서의 위상이 약화되어 인터넷 시장과 유사한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의 광고 경쟁력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방송 환경 변화는 결과적으로 지역방송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지난 6년간('12~'17년) 지상파방송 전체 매출액 연평균성장률은 -1.01%로 방송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12~'17년) 지역방송은 -2.14%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지역방송의 상황이 전체 지상파방송에 비해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시장에서 지역방송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 또한 '12년 15.1%'에서 '13년 14.7%', '14년 14.3%', '15년 14.5%' '16년 13.5%', '17년 14.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6년간('12~'17년) 지상파방송 전체의 종사자 수는 14,186명에서 14,355명으로 연평균 0.24% 성장했다. 이에 비해 지역방송사는 3,277명에서 2,913명으로 -2.33% 성장을 보였다. 지역방송의 경우 관련 수치의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방송의 제작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관련 전문가 심층인터뷰

본 연구는 내용·편성 및 경영적 측면에서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역성 지수를 현실적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하기 위해 지역방송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흘의 기간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현행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평가 영역별 항목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응답자 개인별로 필요에 따라 새로 추가해야 할 항목이나 불필요하여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항목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의 영역별 배점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 항목별 배점과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밖에 기타 항목을 추가해 지역성 지수 개선에 대해 응답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결과, '방송 내용 및 편성'의 평가 항목의 구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새롭게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 지역 시사보도 토론·정보프로그램의 평가, 지역 프로그램의 질적 평가 및 시청률, 지역방송 프로그램 장르 또는 포맷의 다양성, 보도에서 권역 내 다양성 유지,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등이었다. 반대로 현행안의 항목 중 삭제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는 장애인 시

청지원 프로그램 평가, 주 시청 시간대 지역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평가 등 지역 방송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그 실효성이 없는 항목들이었다. 평가 항목의 배점 구성에 대한 응답은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평가 항목을 상향 배점, 자체 제작 편성비율 평가 항목을 상향 배점,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평가 항목의 상향 배점의 의견이 있었다. 배점 구성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주 시청 시간대 지역 자체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방송 운영’ 영역의 경우, 평가 항목의 구성에 새로 추가해야 할 항목으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추가적으로 계약직의 임금수준 평가, 지역방송 지배구조의 독립성, 순이익의 방송 투자비율, 지역 장애인과 여성의 고용평가 등의 항목도 있었다. 반대로 삭제가 필요한 항목은 ‘영업이익 대비 배당비율 평가’ 항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 ‘재난방송의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평가’,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 항목이었다. ‘방송 운영’ 영역의 배점구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영업이익대비 배당비율 평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 ‘시청자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 순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하향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영업이익대비 배당비율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평가’ 항목이었다.

3) 지역방송 지역성지수 평가 항목 구성 개선

지역성지수 평가 항목 구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송 내용 및 편성영역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항목의 대폭 확대 및 주시청시간대 편성 비율 항목의 삭제, 그리고 편성에서의 지역민 의견 수렴에 관한 항목의 보완 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항목은 기존의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평가’ 및 ‘자체평가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실적’에 더하여 ‘자체 제작 프로그램 투자평가’를 추가하였다. ‘지역 밀착성 확보 노력’ 항목의 경우 현재의 세부항목 중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항목만을 남기고 ‘편성제작의 지역민 의견 수렴’과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를 추가하여 지역 밀착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편성의 적정성 항목’은 ‘자체 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 비용 평가’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방송 운영 영역에서는 현재 10개의 세부항목을 8개로 축소하고, 지역방송의 공정성 및 자율성 확보 관련 평가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경영의 적정성’ 항목에서는 ‘재무의 건전성 종합평가’,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 ‘제작 인력 평가’ 등의 기존 세부항목에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를 추가했다.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에서는 세부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와 ‘재난 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의 두 항목으로 구성했다.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항목 역시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와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의 2개 항목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4)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배점 및 측정방법

평가항목의 배점은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과 ‘방송운영 영역’의 배점을 기존과 동일하게 500점씩 그대로 배정했다.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과 ‘방송운영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평가항목은 100점에서 18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밀착성 확보노력’ 평가항목은 200점에서 2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편성의 적절성’ 항목은 200점에서 10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방송운영 영역의 배점은 ‘경영의 적정성’ 평가항목의 배점을 약간 낮춰 240점에서 230점으로 조정했다.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항목의 배점은 170점에서 150점으로 낮아졌다.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 평가항목은 90점에서 120점으로 배점을 높였다.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활용자료는 방송평가 자료, 방송사 제출자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공식자료인 재산상황공표집,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한다. 재산상황공표집,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를 활용하는 이유는 지역방송사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중 방송평가 항목과 동일한 항목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평가에서 활용하는 척도를 그대로 활용한다. 단, 배점의 경우, 지역성 지수에서 배점한 점수에 비례하여 배점한다. 이외의 항목에 대한 측정 은 각종 현황 자료 및 방송사 제출 자료를 활용해 측정하여 획득 점수를 배점한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및 기대효과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개선안은 최근 지역방송의 환경과 운영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방송의 재정적인 어려움, 프로그램 제작의 부족, 지역 시청자 권익 증진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이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구현해야할 지역성을 적절히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평가의 기본 원칙인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여 반영하였다. 즉, 지역방송의 지역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지표로서, 어느 누가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척도의 적정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기존의 지역성지수가 갖는 평가의 중복성, 행정적인 번거로움, 지역성 구현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타당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안을 토대로 지역성지수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면, 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천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UMMARY

1. Title

Improvement plans of locality index on local broadcasting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re are four reas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broadcasting locality index. First,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validity of whether the locality index accurately reflects th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broadcast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data and the index calculation formula for calculating the locality index.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carefully revise various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evaluating data for locality index measurement. Fourth, an improvement plan should be presented to improve the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regional responsibility of local broadcasting through validation of locality index, improvement of reliability, and review and improvement of measurement problem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the evaluation of the locality index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ity index. In detail, we tried to suggest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ew evaluation items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autonomy of local broadcasting. Also, we tri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by examining the

feasibility and reliability such as whether the locality index appropriately evaluates the function and role of local broadcasting. In addition, we suggested the ways to improve local competitiveness of local broadcasting through the process of operation and evaluation of the locality index.

4. Research Results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locality index by analyzing the environment of local broadcasting and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The proposed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content and programming section, we propose to enlarge the 'excellence of broadcasting program', to delete the 'prime time programming ratio', and to 'consider the opinions of the local people in the formation'. In the case of 'efforts to secure local cohesion', 'local residents' feedback' and 'evaluation of local broadcasting company's own production and locality implementation program evaluation ratio' were added, leaving only 'local access program evaluation' among the current detailed items. This emphasizes the original intention of securing local affinity. 'Appropriateness of programming' consisted of two items: 'evaluation of purchasing cost per minute program of self-programmed program' and 'evaluation of program support program for the disabled'.

In the operation section, it proposed to reduce the number of 10 items to 8 and add an item to evaluate the fairness and autonomy of local broadcasting. First, in the item 'rationality of management', we adde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financial soundness' and 'assessment of participation in retraining of members'. In addition, 'appraisal of production workers' added 'appraisal of self-review and fairness-related self-regulation system operation'. The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category consisted of 'evaluation of contributions such as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local culture'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of programming and operation of disaster broadcasting'. The 'protection of local viewer interests' item also proposed to reduce to two items of

'viewers committee operation status and result evaluation' and 'viewer opinion reflection evaluation'.

Suggestions for improving scoring for items. In the content and programming section, 'the excellence of program' was upgraded from 100 to 180 points. The 'efforts to secure local cohesion' have been upgraded from 200 points to 220 points. 'The appropriateness of programming' was downgraded from 200 points to 100 points. The number of points in the operation section has been adjusted from 240 to 230, which is the result of a reduction in the score of 'appropriateness of management'. The rating of the 'contribution to community' item dropped from 170 to 150 points. The rating of 'protection of local viewer interests' increased from 90 points to 120 point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locality index improvement plan proposed in this study considers the environment and operating conditions of local broadcasting in recent years. Financial difficulties of local broadcasting, lack of program production, and efforts to promote the interests of local viewers. Through this, we searched for ways to appropriately assess the roles that local broadcasting should perform in the region and the localities to implement.

6. Expectations

The proposed solution is to solve the redundancy of evaluation, administrative hassle, validity of scale to measure the localization degree, etc. Based on the proposal of this study, if we improve the LIS, we expect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ndex and improve efficiency in the practic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지역성 지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 제한 기준」고시에 근거하여 지역방송사에 대한 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서 지역성 지수가 적용되었다. 지역성 지수는 지역방송사가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 등 지역방송의 역할 및 기능 수행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지역성 지수는 지역방송사에 대한 기금 지원 제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정도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교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성 지수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2년간 지수를 산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지역성 지수 도입 이후 발견된 제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차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지역성 지수가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지역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관련하여 지역방송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가 지역성 지수의 항목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성 책무의 수행의 경중에 비추어 가중치가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거나 혹은 과소평가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역방송의 자율성 확보 및 언론자유 실현에 지역성 지수가 기여하는 정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의 인적 자원 전문화 및 고도화 등을 통해 지역성 지수가 지역방송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의 점검도 필요하다.

둘째는 지역성 지수 산출을 위한 데이터 및 지수 산출 공식의 신뢰도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의 지역성 실천 정도는 양

적, 질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치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항목 구성의 상호배타성 측면에서 지역성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 서로 중복되어 이중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없는지, 즉 항목이 상호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기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예;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판단, 정규직 직원의 정의 등)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지역성 지수 측정의 문제점 검토도 필요하다. 지역성 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한편 실무적으로 지역성 지수 측정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세심하게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송평가와 중복되는 항목 측면에서는 이중 규제의 문제 검토 및 데이터 통합 방안 점검(예: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시청자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 특히 변별력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변별력이 낮은 항목의 경우 구간별 배점과 공식 등을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대 평가/상대 평가의 항목구성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절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상대적인 성취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역MBC와 지역민방 평가의 형평성 문제, 즉 편성실적 평가 등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지역성 지수 시행 평가의 개선도 필요하다. 지역성 지수의 타당성 확보, 신뢰도 개선, 측정상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을 통해 지역방송의 지역성 책무 구현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방송 구성원 교육 등 지역방송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예: 교육 참여율 등)을 지역성 지수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방송사의 경쟁력 확보(예: 인적 자원 전문화 및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성 지수 평가 개선을 통해 지역방송의 언론자유 및 방송활동의 자율성 확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2016년부터 지역방송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성 지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의 평가제도 시행결과를 토대로 지역성 지수의 평가항목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방송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신규 평가 항목의 개발 및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성 지수가 지역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등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 시행 및 평가과정을 통해 지역방송의 지역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의 세부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역성 지수 개념의 재정립을 하고자 한다.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자율성 확보, 경쟁력 제고 등 지역방송발전지원 제도의 기본 목적에 지역성 지수의 세부 항목들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성 지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둘째는 지역성 지수 평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역성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항목 구성의 중복성, 측정 기준의 모호성, 산출 공식의 불완전성 등 지수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지역성 지수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는 지역성 지수 측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성 지수 점수 부여의 기준, 가중치,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의 적용, 구간별 배점, 공식 등 지역성 지수 평가 과정에서 세부적인 측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성 지수의 측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성 지수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세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지역성 지수에 관한 기존 연구 고찰이다. 지역방송의 지역성 제고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둘째는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방송의 경영, 운영, 편성 및 내용 영역의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방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방송의 여건과 법, 그리고 제도 등의 정책 환경을 분석하였다.

셋째는 현행 지역성 지수의 평가 항목 및 측정 방안을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존 지역성 지수의 구성 및 운용 내용을 검토하였다. 특히 기존 지역성 지수의 구성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존 지역성 지수의 측정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언론자유 확보를 위한 평가항목, 지역방송의 방송활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평가항목, 지역방송의 교육과정 참여율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지역방송의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등을 개발하였다.

넷째는 지역성 지수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배점 및 측정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성 지수 평가항목의 배점 및 측정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성 지수의 배점 및 측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성 지수의 측정 절차 및 기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는 지역방송의 지역성 제고를 위한 지역성 지수 시행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의 평가 과정, 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의 시행 및 적용 방안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기존 문헌고찰, 연구협의체 운영, 정책연구반 구성 및 운영, 심층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개괄

연구방법	내용
문헌고찰	기존 연구 및 문헌 고찰
연구협의체 운영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등과 연구진행 협의
정책연구반 운영	지역방송 지역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
심층인터뷰	지역방송 종사자들 중심으로 지역성 지수의 개선사항 시행 개선방안 등의 의견을 수렴

첫째는 연구의 기초 현황파악을 위한 문헌연구이다. 국내외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는 연구협의체 운영이다. 연구 진행 및 결과에 대해 관련 연구진과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지역방송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담당자 등과 연구협의체를 운영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진행을 조율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는 정책연구반 구성 및 운영이다. 관련 학자, 관련 정책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넷째는 지역방송 실무자 심층인터뷰(FGI)이다. 지역방송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방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성 지수의 개발, 지역성 지수의 시행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2장 지역성 지수에 관한 기존 연구

제1절 지역성 지수의 배경과 현황

지역성 지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방송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된 지수이다. 2014년 12월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방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법의 시행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여 지역방송의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지역방송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 ②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우
- ③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지역성 지수에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한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 제6항에 따른 기금 지원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22호)에 마련되어 있다. 해당 고시의 제2조에서는 위의 세 기준과 관련한 세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①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광고 중단, 제1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등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이윤 배당 등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방송사업자만 특별히 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600점미만을 획득한 경우

한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의 제3조에는 지역성 지수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제3조(지역성 지수 평가) 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내용·편성 및 방송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내용·편성 영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방송운영 영역에서는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 ② 방송내용·편성 영역의 평가는 해당 지역방송사업자가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 ③ 지역성 지수 평가의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별표와 같다.

앞에서 언급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내용·편성 영역과 방송 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고시에서는 지역성 지수의 세부 평가 방법과 배점을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별표에 따르면, 지역성 지수의 평가점수는 방송내용·편성영역과 방송운영 각 영역별로 500점을 배점하고 있어, 1,000점을 만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내용·편성 영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며, 방송 운영 영역에서는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해 평가한다.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평가의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1>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500점)

평가항목	배점 (500)	세부 평가항목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100	-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50)
		-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50)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200	-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110)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45)
		- 주 시청 시간대 지역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45)
편성의 적정성	200	-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110)
		-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60)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30)

<표 2-2> 방송운영 영역(500점)

평가항목	배점 (500)	세부 평가항목
경영의 적정성	240	- 영업이익대비 배당 비율 평가(120)
		- 구성원 재교육 활성화 평가(80)
		- 제작 인력 평가(40)
지역사회 기여도	170	-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80)
		- 지역 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30)
		-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30)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30)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90	-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30)
		- 시청자 의견 수렴의 적절성 평가 (30)
		- 시청자 불만 처리의 적절성 평가(30)

제2절 지역성 지수 관련 기존 연구

지역성 지수에 관한 기존 연구는 지역성 지수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연구는 많이 누적되어 있지 않다. 넓은 의미에서 지역성 지수와 관련이 있는 연구는 지역방송의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관한 연구, 지역성 지수의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지역방송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뤄져왔다. 김재영과 양선희(2015)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역방송을 주제로 한 기존 연구는 62편에 달하며 이 중에서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논문은 18편이다. 이들은 지역방송 활성화를 다루고 있는 논문 18편을 분석한 결과 당위적·규범적 성격의 정책·법제 연구가 대부분이며 참신한 주제를 다양하고 폭넓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충식(2015)은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지역방송의 경영상황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고수의 감소와 프로그램 경쟁력 약화로 인해 지역방송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방송의 경영다각화는 공익성과 공공성 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방송이 창출하는 가치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변상규, 2016)에서는 지역 시청자들의 지불의사가 408.71원(매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지역방송이 매년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지역방송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발전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관한 연구는 동 법의 의의와 내용 등을 진단하는 연구(김재영·한상현, 2015; 조항제, 2015)와 동 법에 대한 지역방송 종사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김영수·최진호, 2015)가 있다. 김재영과 한상현(2015)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지역방송의 실상과 본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또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지역방송의 정체성, 거버넌스, 권역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조항제(2015)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지역방송 활성화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성(로컬리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강철수와 김덕모(2017)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분석하고, 지역방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유통구조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성 지수의 정교화 등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영수와 최진호(2015)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대한 지역방송 종사자의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지역방송 지원계획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을 분석한 결과 재정안정지원제도 기반 조성,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지역방송 자체역량 구축, 지역 프로그램 유통 촉진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방송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을 분석한 방송통신위원회(2012)의 연구에서는 지역방송의 자체편성비율 의무를 자체제작비율 의무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체제작비율 정책 도입의 효과로 세 가지 효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방송의 광고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지역방송의 외주제작 및 구매 프로그램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지역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에 관한 연구로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도입되기 10년 전에 이루어진 주정민(2004)의 연구와 특별법 도입 이후 이루어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2014; 2015)를 들 수 있다. 주정민(2004)은 지역방송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역성 지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수 구성의 범위로는 지역방송의 편성, 내용, 운영 영역을 제안하였는데, 그가 제안한 지수 구성 체계는 이후 2015년 지역성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정보통신연구원(2014)의 연구에서는 지역성 지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고시 제정에 활용 가능한 지역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를 지역방송에 대한 기금 지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활용할 것과, 이를 토대로 지역방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후속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에서는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의 수립 배경 및 비전, 추진 전략 등을 검토하고, 지역성 지수 평가 항목의 배점 방식과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성 지수 평가(1,000점 만점) 결과 60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하며 심사대상 기간은 심사 전전년도 1년간으로 명시했다(42쪽). 이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고찰과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성 지수의 배점방식 및 산정기준 설계 방식을 상세히 제안하고 있다.

제3장 지역방송 환경 및 현황분석

제 1 절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환경

1. 지역방송 경영여건 악화

우리나라의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지역방송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다양성 가치의 보존과 그 실현을 위해 다양한 규제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방송산업의 경영여건 악화 영향으로 지역방송은 지난 6년간('12~'17년) -2.14%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 시장에서 지역방송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 또한 '12년 15.1%에서'16년 13.5%로 지속 감소하다가 '17년 14.3%로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표 3-1> 지역방송 매출액 추이 (2012 ~ 2017년)

(단위: 억 원)

방송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성장률 ('12~'17)
지상파 전체	45,238	44,729	45,496	46,859	46,175	43,003	-1.01%
지역방송	6,847 (15.1%)	6,573 (14.7%)	6,488 (14.3%)	6,772 (14.5%)	6,254 (13.5%)	6,146 (14.3%)	-2.14%
중앙지상 파 3사	30,783 (68.0%)	30,220 (67.6%)	30,952 (68.0%)	31,701 (67.7%)	31,230 (67.6%)	28,410 (66.1%)	-1.59%

- * 중앙지상파는 KBS, MBC, SBS의 합, 지역방송은 지역MBC(18개사)+지역민방(10개사) 합
- * 지상파 전체는 공동체라디오를 제외한 지상파방송 전체 합
- * ()는 지상파 전체 대비 해당 방송사업자의 비율
-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각 연도.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악화는 매출액 추이에서만 아니라 방송사업의 수익 추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 6년간('12 ~'17년) 지상파 방송 전체의 방송사업 수익은 3조 9,566억 원에서 3조 6,837억 원으로 연평균 -1.42%로 마이너스 성장했다. 여기에 지역방송사의 방

송사업 수익은 '12년 6,104억 원에서 '17년 4,969억 원으로 -4.03% 성장률을 보여 지상파 방송 역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방송은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상파 방송시장 사업수익에서 지역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년 15.4%에서 '16년 13.2%, '17년 13.5%로 계속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역방송 경영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표 3-2> 지역방송 방송사업수익 추이 (2012 ~2017년)

(단위: 억 원)

방송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성장률 '12 ~ '17
지상파 전체	39,566	38,957	40,049	41,007	39,987	36,837	-1.42%
지역방송	6,104 (15.4%)	5,708 (14.7%)	5,706 (14.3%)	5,879 (14.3%)	5,260 (13.2%)	4,969 (13.5%)	-4.03%
중앙지상파 3사	30,234 (76.4%)	29,807 (76.5%)	30,874 (77.1%)	31,275 (76.3%)	30,782 (76.9%)	27,981 (75.9%)	-1.54%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위에서 보듯 지역방송의 경영악화는 매출액, 방송사업수익과 더불어 광고수익의 경우에서도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에 제시되어 있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방송의 광고수익 추이를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과 비교했을 때 지상파 전체는 '12년 2조 1,798억 원에서 '17년 1조 4,121억 원으로 -8.32% 성장률을 보였고, 특히 지역방송은 '12년 4,556억 원에서 '17년 2,863억 원으로 -8.87%라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전반적인 국내 방송광고시장의 감소추세라는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앞선 방송매출액과 방송사업 수익 추이와 더불어 지역방송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3> 지역방송 광고수익 추이 (2012 ~2017년)

(단위: 억 원)

방송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성장률 '12~'17
지상파 전체	21,798	20,672	18,976	19,112	16,228	14,121	-8.32%
지역방송	4,556 (20.9%)	4,206 (20.3%)	3,800 (20.03%)	3,966 (20.7%)	3,361 (20.7%)	2,863 (20.2%)	-8.87%
중앙지상파 3사	16,149 (74.1%)	15,322 (74.1%)	14,091 (74.26%)	14,042 (73.4%)	11,867 (73.1%)	10,320 (73.1%)	-8.57%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다음은 지역방송 기타사업 매출액 비중으로 지역방송의 기타사업 매출액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을 통해 창출한 매출액이다. <표 3-4>에 따르면, 방송사 총 매출액에서 기타사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MBC는 13.9%, 지역 민방은 24%로, 이는 0.8% ~ 2.9% 수준을 보이는 중앙방송사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역방송사의 기타사업 매출액 비중이 높은 것은 지역방송사가 경영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 사업인 방송부문 이외의 사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4> 지역방송 기타사업매출액 비중 (2017년 기준)

(단위 : 억 원)

방송사		총 매출액	방송사업 매출액	기타사업 매출액	기타사업 매출액 비중
지역 방송	지역MBC(18개사)	2,976	2,560	415	13.9%
	지역민방(10개사)	3,170	2,408	761	24.0%
중앙 지상파 3사	KBS	14,325	14,163	162	1.1%
	MBC	6,706	6,655	51	0.8%
	SBS	7,378	7,162	216	2.9%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8), <201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 지역방송 인력 감소

지역방송의 경영악화는 재정적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제작 인력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3-5> 지역방송 종사자수 추이를 보면 지상파 전체 종사자 수는 '12년 14,186명에서 '17년 14,355명으로 연평균 0.24% 증가한 반면, 지역방송의 종사자수는 '12년 3,277명에서 '17년 2,913명으로 연평균 2.33% 감소했다. 특히 '17년 기준 지역방송사 전체 종사자수는 2,913명(1사당 평균 종사자 수 107.9명)으로, 이는 지상파 전체의 20.2%에 해당하여 지역방송의 경영 여건 악화가 방송 인력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지역방송 종사자수 추이 (2012 ~ 2017년)

(단위: 명)

방송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성장률 '12 ~ '17
지상파 전체	14,186	14,387	14,365	14,293	14,288	14,355	0.24%
지역방송	3,277 (23.1%)	3,226 (22.4%)	3,079 (21.4%)	2,979 (20.8%)	2,880 (20.2%)	2,913 (20.2%)	-2.33%
중앙지상파 3사	7,876 (55.52%)	7,938 (55.17%)	7,840 (54.6%)	7,727 (54.1%)	7,946 (55.6%)	7,908 (55.1%)	0.08%

* 종사자수는 임원, 관리행정직,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제작관련, 기타), 기술직, 연구직, 영업/홍보직, 기타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8).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방송 인력 중 실질적인 방송직 종사자수 추이를 나타낸 <표 3-6>을 보면 지역방송의 제작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나타난다. 지상파 전체는 지난 6년간('12 ~ '17년) 7,964명에서 8,771명으로 연평균 1.95% 증가한 반면, 지역방송은 1,906명에서 1,635명으로 오히려 연평균 3.02% 감소했다.

'17년 기준 지역방송사의 방송직 종사자수는 1,635명(1사 평균 60.6명)으로, 이는 지상파 전체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방송은 경영 여건의 악화에 따라 방송 인력의 부족 문제까지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지역방송 방송직 종사자수 추이 (2012 ~ 2017년)

(단위: 명)

방송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성장률 '12 ~ '17
지상파전체	7,964	7,993	8,419	8,550	8,570	8,771	1.95%
지역방송	1,906	1,841	1,755	1,701	1,633	1,635	-3.02%
지역MBC(17)	887	871	841	826	788	738	-3.61%
지역민방(10)	1,019	970	914	875	845	897	-2.52%
1사 평균	68.1	65.8	62.7	60.8	60.5	60.6	-2.31%
중앙지상파 3사	4,349	4,312	4,732	4,695	4,887	5,059	3.07%
KBS	2,624	2,579	2,895	2,842	2,891	2,848	1.65%
MBC	1,115	1,045	1,197	1,176	1,401	1,649	8.14%
SBS	610	688	640	677	595	562	-1.63%
평균	1,450	1,437	1,577	1,565	1,629	1,686	3.06%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 방송직은 기자, PD, 아나운서, 제작관련(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기타(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를 합한 것.

3. 자체편성 및 자체제작 저조

경영여건의 악화와 제작인력의 부족으로 지역방송은 지역사회에 지역방송국으로써 그 지역성 구현과 지역여론 형성이라는 제 기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표 3-7>에 제시되어 있는 지역방송의 자체편성 프로그램 비율을 보면, 지역방송사가 편성하는 프로그램 중 중앙방송사로부터 수급 받는 프로그램(수중계)이 아닌 지역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구매하여 편성하는 프로그램 비율(자체편성 비율)은 높지 않다. 구체적으로 '17년 기준 지역MBC의 1사당 평균 자체편성 비율은 14.68%이며, 지역민방 10개사의 1사당 평균 자체편성 비율은 36.57%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OBS제외시 29.52%).

<표 3-7> 지역방송 자체편성 프로그램(TV) 시간 (2017년 기준)

(단위: 분)

방송사		연간방송시간		본방송시간	자체편성시간	자체편성비율
지역 방송	지역MBC (1사 평균)	2017	469,023	318,334	68,784	14.68%
	지역민방 10개사 (1사 평균)	2017	461,652 (463,477)	36,161 (375,444)	167,684 (136,846)	36.57% (29.52%)

- * 지역민방의 괄호 안의 수치는 OBS경인TV(자체편성 비율 100%)를 제외한 수치임
- * 자체편성은 수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한 제작, 외주, 구매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미
-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8), <201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표 3-8>의 지역방송 제작원별 자체제작 프로그램(TV) 시간을 봐도 지역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시간은 중앙 방송사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7년 기준 지역 MBC의 방송 프로그램 (자체제작, 공동제작, 순수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의 시간량은 1사 평균 181,994분이지만 서울 MBC는 1,201,105분으로 서울 MBC가 대부분의 프로그램 제작을 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역 MBC는 종합편성채널 1사 평균 시간 115,366분과 큰 차이가 없어 지역방송이 제 기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역민방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지역민방 10개사 총 시간량은 2,341,847분으로 1사 평균 234,185분 정도다. SBS가 1,321,590분임을 감안하면 지역민방 1사의 제작시간은 SBS의 약 5분의 1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표 3-8> 지역방송 제작원별 자체제작 프로그램(TV) 시간 (2017년 기준)

(단위: 분)

방송사		자체제작	공동제작	순수외주	특수관계사 외주	합계	
지역 방송	지역MBC	합계	3,093,905	547,935	42,280	45,320	3,729,440
		평균	181,994	32,231	2,487	2,666	219,378
	지역민방 (10사)	합계	2,341,847	280,792	193,269	470	2,816,378
		평균	234,185	28,079	19,327	47	281,638
중앙 지상파 3사	KBS	4,124,680	300	371,635	39,375	4,535,990	
	MBC	1,201,105	0	127,750	37,190	1,366,045	
	SBS	1,321,590	0	171,139	36,361	1,529,090	
유료 방송	종합 계열	합계	807,559	0	529,979	24,765	1,362,303
		평균	115,366	0	75,711	3,538	194,615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8), <201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작비용 역시 중앙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표 3-9>는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17년 기준 지역 MBC의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1사 평균 19억 원 수준이며, 지역민방 10개사는 1사 평균 43억 1천만 원 수준이다. 반면 서울 MBC의 제작비용은 2,556억 원, SBS는 2,307억 원, 종합편성채널은 1사 평균 505억 원으로 이를 통해 볼 때 지역방송은 매우 낮은 수준의 제작비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9> 지역방송 프로그램(HDTV) 제작비 (2017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방송사		자체제작	공동제작	순수외주	특수관계사 외주	합계	
지역 방송	지역MBC	합계	27,233	5,113	715	331	33,392
		평균	1,602	301	42	19	1,964
	지역민방 (10사)	합계	36,175	4,279	2,576	43	43,073
		평균	3,618	428	258	4	4,308

중앙 지상파 3사	KBS	110,619	7	88,593	23,856	223,075	
	MBC	78,810	0	161,092	15,731	255,633	
	SBS	88,190	0	122,909	19,684	230,783	
유료 방송	중편 계열	합계	132,077	0	191,448	30,469	353,994
		평균	18,868	0	27,350	4,353	50,571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7), <2017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190쪽.

* 종합편성 계열 PP: 매일방송, 제이티비씨, 조선방송, 채널에이, 매일경제티브이, 제이티비씨 스포츠, 제이티비씨플러스가 포함됨

4. 프로그램 유통 비활성화

<표 3-10>의 프로그램 판매수익의 경우에서도 지역방송이 가지는 문제는 드러난다. '17년 기준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은 지상파 전체가 6,429억 원, 지역방송은 94억 원으로, 지역방송 방송프로그램 판매 수익이 지상파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지난 6년간 프로그램 판매수익의 측면에서도 지상파 전체는 연평균 3.64% 증가한데 반해, 지역방송은 -6.56%로 역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지상파 전체 및 중앙 지상파3사 성장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10%가 넘는 성장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방송의 재정적 여건악화에서 시작된 문제가 제작인력의 부족, 프로그램 자체 제작 비율 저하, 제작비 수준 저하, 프로그램 유통 부진의 문제로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0> 지역방송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추이 (2012 ~ 2017년)

(단위: 억 원)

방송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성장률 '12~'17
지상파전체	5,376	5,385	6,730	6,839	7,875	6,429	3.64%
지역방송	132 (2.5%)	140 (2.6%)	138 (2.1%)	113 (1.7%)	108 (1.4%)	94 (1.5%)	-6.56%
중앙지상파 3사	4,896 (91.1%)	4,841 (89.9%)	6,116 (90.9%)	6,248 (91.4%)	7,317 (92.9%)	5,931 (92.3%)	3.91%

* 방송 프로그램 판매수익은 국내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제 4 장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관련 심층인터뷰

제 1 절 조사대상 및 내용

1. 조사대상

현재 시행 중인 지역성 지수에 대해 전문가 및 현업종사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흘간의 기간 동안 해당분야 전문가 및 현업종사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학계에 있는 전문가 5인과 지역방송사 현업에 종사 중인 5인을 포함한 총 10인에게 실시했다. 이들에게 연구 기간 동안 운영된 정책연구반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의 항목구성과 배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심층인터뷰>지를 온라인을 이용하여 배포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2. 조사 내용

심층인터뷰 내용은 현행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평가 영역별 항목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개인별로 필요에 따라 새로 추가해야 할 항목이나 불필요에 따라 삭제되어야 하는 항목을 물었다. 아울러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의 영역별 배점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 항목별 배점과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밖에 지역성 지수 개선에 대해 응답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하였다.

제 2 절 조사결과

1.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에 대한 결과

지역방송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심층인터뷰는 먼저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에서

현행안과 정책연구반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표 4-1>의 현행안은 현재 시행 중인 평가기준이고, 개선안은 새로 재구성한 안이다. 개선안은 현행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의 평가항목에서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 세부 평가항목을 운영 영역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평가항목에 “편성제작의 지역시청자 의견수렴” 세부 평가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표 4-1>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의 개선안(정책연구반)

<현행>

평가항목	배점 (500)	세부 평가항목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100	-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50)
		-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50)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200	-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110) * 개선안의 운영영역으로 이동, 통합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45)
		- 주 시청 시간대 지역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45)
편성의 적정성	200	-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110)
		-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60)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30)

<개선안>

평가항목	배점 (500)	세부 평가항목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150	-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30)
		-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40)
		-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운영영역 이동항목)(80)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210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50)
		-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이동항목)(100)
		- 편성제작의 지역시청자의견 수렴(신규항목)(60)
편성의 적절성	140	- 주 시청 시간대 지역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이동항목) (60)
		-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50)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30)

1) 항목 구성에 대한 의견

개선안을 근거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평가항목의 구성 중 새롭게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 (2명), 지역 시사보도 토론·정보프로그램의 평가 (2명), 지역 프로그램의 질적 평가 및 시청률 (1명), 지역방송 프로그램 장르 또는 포맷의 다양성 (1명), 보도에서 권역 내 다양성 유지 (1명), 지역 자체 프로그램 편성의 지속성 (1명),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1명)을 들었다. 이들 항목은 지역방송이 해당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지역방송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현행안과 개선안에 존재하는 항목 중 불필요해 삭제 될 필요가 있는 항목들로는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평가 (4명), 주 시청 시간대 지역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평가 (3명),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 (1명), 지역대학 출신 고용평가 (1명),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 (1명) 이 언급되었다. 이 항목들은 기존에 별도의 편성 규제로 존재하는 항목이거나 평가 항목의 실효성 등에 의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 배점 구성에 관한 의견

방송내용 및 편성 항목의 배점 구성에 대한 응답은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평가 항목을 상향 배점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역성 구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서 자체 제작 편성비율 평가 항목을 상향 배점해

야 한다가 1명,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평가 항목을 상향 배점해야 한다가 1명으로 나타났다.

배점 구성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주 시청 시간대 지역 자체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소비행태를 고려해 볼 때, 주 시청 시간대라는 의미가 퇴색되었고, 자체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낮기 때문에 평가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 외 지역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평가, 편성제작의 지역 시청자 의견 수렴에 대해 2명이 하향 배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 항목은 1명이 하향 배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상향과 하향 배점에 앞서 좀 더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지역방송 편성의 적정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 구성이다. 140점인 편성의 적정성의 배점을 높이고 반면 210점인 지역밀착성 확보노력을 하향 배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편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방송운영 영역에 대한 결과

방송운영 영역은 현재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3개 평가 항목, 10개 세부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정책연구반에서는 회의를 거쳐 각 세부 항목별 평가의 배점 구성을 재조정하고 경영의 적정성 항목에 '지역방송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라는 세부 평가항목을 새로 신설했다.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항목에서는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을 편성 영역으로 이동했으며,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을 삭제하였다. 아울러 편성영역의 '지역 내 업체 및 기관과의 협력' 항목을 방송운영 영역의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항목에 있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과 통합했다.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평가항목에서는 '시청자 의견 수렴의 적절성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과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을 합쳐 '시청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라는 세부평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표 4-2> 방송운영 영역의 개선안(정책연구반)

<현행>

평가 항목	배점 (500)	세부 평가항목
경영의 적정성	240	- 영업이익대비 배당 비율 평가(120)
		- 구성원 재교육 활성화 평가(80)
		- 제작 인력 평가(40)
지역사회 기여도	170	-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80) 편성영역으로 이동
		- 지역 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30) 삭제
		-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30)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90	-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30)
		- 시청자 의견 수렴의 적절성 평가 (30) 통합
		- 시청자 불만 처리의 적절성 평가(30) 통합

<개선안>

평가항목	배점 (500)	세부 평가항목
경영의 적정성	230	- 영업이익대비 배당 비율 평가 (50)
		- 지역방송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80) * 신설
		-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 (50)
		- 제작 인력 평가 (50)
지역사회 기여도	150	-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100) * 편성 영역에서 '지역 내 업체 및 기관과의 협력' 항목 통합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50)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120	-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 (50)
		- 시청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 (70) * 통합

1) 항목 구성에 대한 의견

제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방송운영 영역에서 새로 추가해야 할 항목은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가 5명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다. 이는 지역대학 출신자의 고용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계약직의 임금수준 또한 평가 항목에 새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지역방송 지배구조의 독립성, 순이익의 방송(지역프로그램) 투자비용, 경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지역 장애인과 여성의 고용 평가 항목이 새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명씩 나타났다.

반대로 항목 구성에 있어 삭제 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는 ‘영업이익 대비 배당비율 평가’이라는 의견이 3명이었다. 이어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 항목이 2명이었다. 이는 앞서 5명이 추가해야 할 항목으로 응답한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인 응답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르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재난방송의 편성 및 운영 현황 종합평가’,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에 대해서도 각각 1명씩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방송운영 영역에서 추가와 삭제에 앞서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항목은 ‘지역방송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과 ‘시청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이다. ‘지역방송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항목은 실제 측정방안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시청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경우 이전처럼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불만처리’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배점 구성에 관한 의견

방송운영 영역의 배점 구성에 대해 먼저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영업이익대비 배당비율 평가’ 2명,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2명,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 1명, ‘시청자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 1명,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 1명이었다. 이 중 ‘영업이익대비 배당비율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의 경우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1명씩 있었다.

배점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경영의 적정성' 평가항목이 정책연구반 개
선안에서 23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1명)이 있었
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 (150점) 평가항목에 '지역대학 출신 채용평가 (80점)'라는
세부 평가항목을 추가해 230점으로 하고 '경영의 적정성'을 150점으로 하향 하자는 것
이다. 그러나 다른 응답자는 '경영의 적정성' 평가항목이 방송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것인 만큼 230점인 배점 구성을 더욱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 기타의견

방송의 내용과 편성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감
하는 항목이 있는 반면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는 항목도 존재했다. 이 밖에 지역성 지수에
관련한 기타 의견으로 지역성 지수 평가 항목이 최대한 축소되고 방송평가 지수를 활용하
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성 지수가 기금지원의 기준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 관련 평가에도 폭넓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성 지수가 지역방송의
체질을 바꾸는 평가지수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5장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 평가항목 개선

제1절 지역성 지수 평가항목의 적정성

1.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은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정성 등 세 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항목은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및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의 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는 지역방송이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지역방송의 질적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성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 단체로부터 수상한 실적을 근거로 평가하게 되는데,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항목이며 배점(50점) 역시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은 방송 프로그램 품질의 우수성과 더불어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지역방송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을 통해 산업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사별로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판매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된다. 이 항목은 방송사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지역성이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국내외 유통에서 불리하다는 속성 때문에 지역방송의 지역성 제고라는 책무 수행과는 상반되는 가치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가장 지역적인 프로그램이 국내의 다른 지역, 혹은 해외에서도 더 잘 소통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동 항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지역방송이 미디어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 항목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항목은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주 시청 시간대 지역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등 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은 지역의 독립제작사, 대학,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유관기관,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동 항목은 지역마다 여건의 차이가 크다는 점과 실질적인 기여보다는 서류상의 기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먼저, 경쟁력 있는 독립제작사와 유관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거점 미디어 센터 등이 지역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어 지역 간 여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동 항목에서 근본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기 어려운 지역방송이 존재하며, 이 경우 자동적으로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방송사들의 지적이다. 또한 지역의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협력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의미 있는 협력을 통해 지역과의 밀착성 확보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는 지역의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지역방송이 지역민들의 방송 액세스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방송이 지역 매체로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지역민들의 시각에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역성 구현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주 시청 시간대 지역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항목은 주 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주말 오후 6~11시)에 지역방송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역방송이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는 지역방송이 100%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과 지역방송사 간 공동제작, 지역방송과 중앙방송의 공동제작, 지역방송과 외주제작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된다. 지역방송사들은 동 항목이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주 시청 시간대에 한정된 평가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역방송의 편성은 중앙

방송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성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주시청시간대의 경우 지역방송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편성의 적정성> 항목은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는 지역방송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지역방송이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편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역방송이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방식의 공동제작은 지역방송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제 구축에 기여하므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범주에 포함한다. 지역MBC는 15%를 만점으로 9등급으로 평가하고 지역민방은 20%를 만점으로 하여 9등급 평가를 한다. 동 항목은 방송 평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방송 평가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지역방송은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 항목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편성의 적정성’보다는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항목에서 평가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지역방송은 동 항목에 대해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의무 비율 규정에 근거해 지역MBC는 15%, 지역민방은 20%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적 기준 적용이 평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는 지역방송사가 자체 편성을 실행함에 있어서 값싸게 구매한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편성함으로써 지역 프로그램의 품질을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체 구매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을 척도로 활용한 것이다. 편성의 적정성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동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으나, 구매비용이 곧 프로그램의 품질과 비례한다는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는 지역 내 사회적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척

도이다.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은 자막방송 프로그램, 수화방송 프로그램, 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을 뜻하며, 관련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측정한다. 동 항목은 방송평가에 서와 똑같은 척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방송평가의 수치를 그대로 도입한 후 배점 비율에 맞게 환산하여 적용한다. 동 항목을 비롯한 일부 항목은 방송평가에서 이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복해서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 의견이 있으며, 동 항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복 항목으로 포함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2. 방송운영 영역

방송운영 영역은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 세 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의 적정성> 항목은 영업이익대비 배당 비율 평가, 구성원 재교육 활성화 평가, 제작 인력 평가 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지역성 지수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역방송에게 이중고의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다.

‘영업이익대비 배당 비율 평가’는 조직운영의 비합리성을 진단하고 지역방송사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유도하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평가하고 합리성(공공자산인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인하기 위한 척도이다. 지역방송사들의 배당 비율 현황을 파악한 후 전체 사업자들의 영업이익 배당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동 항목과 관련하여 경영 차원의 고려보다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구현 여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이를 구분해서 평가하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동 항목을 ‘순이익의 제작투자비율 및 영업이익 대비 배당 비율 평가’ 혹은 ‘영업이익 대비 배당 및 제작투자 비율 평가’로 수정하여 제작투자 현실을 반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를 신규 항목으로 만들어서 편성 영역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한편 방송평가의 운영영역에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항목이 동 항목과 유사하므로 측정 척

도를 방송평가의 척도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함으로써 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구성원 재교육 활성화 평가’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지역성이라는 공적 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도입되었다.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 1인당 교육비, 직무 연관 교육 평가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동 항목의 경우 방송평가 운영영역에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라는 유사항목이 있으므로 이 항목의 측정 척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동 항목과 관련하여 단순히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방송 종사자들이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제작 인력 평가’는 지역방송사가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적절한 제작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당지역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창조 확산하는 등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의 질적 제고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 항목은 전체 구성원 중 제작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다. 이 때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을 합산하여 평가 척도를 산출한다. 지역방송의 제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제작 인력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방송 경영의 여건 상 정규직 제작 인력을 확대하기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은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 지역 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등 4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는 지역방송사가 지역민을 위한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다.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투자 비율(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용/전체 영업비용)을 산출한 후 9구간으로 배점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경우, 지역방송사가 지역성 구현 정도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척도라는 점에서 지역방송사들은 동 척도의 중요성에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동 항목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항목이기는 하지만,

방송운영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의 평가로서 더 적합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 투자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운영 영역의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밀착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지역 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는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고용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지역방송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해당 연도 1개년도의 지역대학출신 고용비율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다. 지역방송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방송사에게 이중의 어려움을 안기는 항목이라는 지적이 있다. 인사 채용의 문제는 방송사 고유의 권한이며, 지역 대학 출신을 고용하는 것이 지역방송사의 지역성 구현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동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 항목은 지역방송사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사업, 장학사업, 문화사업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사가 지역사회에 지원한 공익사업 기부금을 매출액 대비 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지역방송사 종사자,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은 동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한편, 단순한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을 넘어서서 좀 더 다양한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에 대한 기여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는 재난방송 편성비율을 통해 지역의 매체로서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재난방송 매뉴얼의 적정성,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 및 대응시스템 구축, 재난방송 관련 교육실적 등으로 척도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동 항목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별 평가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제주와 강원 등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경우 재난방송이 자주 편성되지만, 이러한 기후적 요인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재난 자체의 발생 횟수가 적기 때문에 재난방송이 자주 편성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 항목이 지역방송의 지역사회 기여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항목이지만, 방송평가의 편성영역에서 이미 평가받고 있는 내용이므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항목은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 시청자 의견 수렴의 적절성 평가, 시청자 불만 처리의 적절성 평가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는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지는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회의록 공개 여부,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여부,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여부, 시청자위원회 운영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측정한다. 동 항목이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이지만, 방송평가에서 이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평가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에 대한 평가가 방송사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인 운영의 내실화보다는 담당자의 서류 작업에 의해 평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었다. 영세한 지역방송의 경우 지역성지수 평가를 위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부적이고 번거로운 서류 작업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시청자 의견 수렴의 적절성 평가’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접수함으로써 지역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의견수렴 전담부서 설치 여부, 의견수렴 결과정리 제출여부 및 평가, 의견수렴 결과정리 공개여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제시 권고사항에 대한 방송사의 처리 정도 등을 통해 측정한다. 동 항목 역시 중요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방송이 동의하지만, 앞의 ‘시청자위원회 구성 활용의 적정성 평가’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력의 여력이 없는 지역방송사의 힘든 경영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항목이며, 실질적인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한 서류 작업에 의해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시청자 불만 처리의 적절성 평가’는 시청자 불만을 얼마나 성실하게 접수 및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을 통해 지역방송이 지역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시청자불만처리 적절성 여부, 방송사의 시청자불만처리 전담부서 운영,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불만처리 절차의 효율성 정도를 통해 측정한다. 동 항목 역시 ‘시청자 의견 수렴의 적절성 평가’와 유사하게 일부 영세한 지역방송이 인력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서류 작업에 의존하는 평가 항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3. 기타

지역방송 지역성지수를 구성하는 기존 척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더불어 지역성지수 전반에 대해 지역방송 구성원 등 관련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지역방송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방송평가와의 중복, 자료 제출의 어려움, 세부 항목의 구성 및 배점의 타당성, 방송사 간 형평성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광고 수익의 감소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대비 배당비율 평가 등 경영 차원의 평가가 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역방송이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 경영 차원의 평가는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성을 구현하는 정도를 더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둘째, 방송평가와 중복되는 항목에 대한 의견이다. 현재 지역성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절성 평가(방송평가에서는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평가), 구성원 재교육 활성화 평가(방송평가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시청자 의견 수렴의 적절성 평가와 시청자 불만 처리의 적절성 평가(방송평가에서는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등 7개가 방송평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다. 방송평가와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한다. 방송평가에서 이미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지역성지수 평가에서 중복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해당 항목들은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지역성지수 평가에 중복 적용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지역방송 종사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회의 결과 대체로 후자의 의견이 더 많았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지역방송 종사자들은 지역성지수 평가를 받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분의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였

다. 지역성지수 산출을 위해 복잡한 데이터와 회의록 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인의 전담 직원이 필요한데, 담당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 제출을 가능한 단순화함으로써 지역방송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방송평가와 유사한 항목의 경우 방송평가 자료로 대체하고, 그밖에 방송산업통계 등 공적인 통계 수치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은 해당 수치로 대체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지역방송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세부항목 구성 및 배점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안되었다.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평가' 항목의 경우 방송운영 영역보다는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에서 평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과 '지역 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항목에 통합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편성제작 과정에서 지역 시청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지역방송 구성원이 재교육 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지역방송이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평가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 항목에 할당된 배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었다. 방송사간 형평성 이슈는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역MBC와 지역민방 간의 형평성과 시장규모가 큰 지역방송과 작은 지역방송 간의 형평성이 그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과 '영업이익대비 배당 비율 평가'에 있어 서로 다른 경영구조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높은 매출이익을 올리고 있는 방송사와 시장규모가 작은 영세 방송사에게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제2절 지역성 지수 평가항목 개선안

1. 지역방송 지역성지수의 개선 방향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지역방송사와 유관 단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지역방송 지역성지수의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지역성지수의 타당성 확보, 지수의 신뢰도 개선, 지수 측정의 합리화가 그것이다.

첫째, 지역방송 지역성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 ①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 등 지역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평가 및 측정하고 있는가?
- ②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관련하여 가중치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항목은 없는가?
- ③ 지역방송의 인적 자원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지역방송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가?
- ④ 지역방송 스스로가 언론자유와 방송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둘째, 지역방송 지역성지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 ① 지수 산출을 위해 적용하는 데이터 및 지수 산출 공식은 신뢰할 수 있는가?
- ② 지수의 구성 항목이 서로 중복되어 이중으로 측정되는 경우는 없는가? (항목 구성의 상호배타성)
- ③ 지수 측정에 있어서 기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세부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가? (기준의 명료성)
- ④ 지수 측정에 있어서 변별력이 명료하고 구간별 배점이 적정한가?

셋째, 합리적인 지수 측정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 ① 각 항목의 속성에 따라 절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지 혹은 상대적인 성취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지 검토한다.
- ② 방송평가와 중복되는 항목, 혹은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데이터를 통합하여 지수 측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③ 지수의 항목을 축소하고 측정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④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제한 이외에 지역방송 지역성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2. 지역방송 지역성지수 개선(안)의 주요 변경 내용

기존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연구반의 심층 토론을 통해 지역방송 지역성지수의 개선안이 1차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앞서 지역방송 지역성지수의 개선방향에서 제시한 검토사항들을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지역방송 지역성지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지역방송 지역성지수 개선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영역 및 항목 별로 정리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면서 일부 항목을 수정하고,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및 ‘편성이 적정성’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을 수정했다.

①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항목 확대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방송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 항목이 배점을 현행 100점에서 180점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방송운영 영역에서 평가하는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를 동 항목으로 이동함으로써 세부항목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났으며 배점도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및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은 같은 배점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②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 수정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항목에서는 일부 세부 평가항목이 수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배점이 다소 확대되었다. ‘지역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는 배점을 소폭 확대하여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세부 항목 중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에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시청 시간대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은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이미 다른 항목에서 평가하고 있으므로 중복 평가에 해당하며, 주시청 시간대에 지역방송사가 실질적으로 편성이 자율성을 갖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반면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는 현재 편성의 적정성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항목에서 평가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 항목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지역밀착성 확보를 위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편성제작의 지역시청자의견 수렴’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한 개의 세부항목(주시청 시간대 지역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을 삭제하고, 다른 항목(편성의 적정성)에서 한 개의 세부항목(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이 동 항목으로 이동하였으며, 한 개의 세부항목(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이 다른 항목(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으로 통합되고, 한 개의 세부항목(편성제작의 지역시청자의견 수렴)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동 항목의 세부항목은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편성제작의 지역민 의견 수렴,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등 세 개이다.

③ ‘편성의 적정성’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 수정

‘편성의 적정성’ 항목에서도 일부 세부 평가항목이 수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배점이 대폭 감소하였다. ‘편성의 적정성’ 역시 지역방송의 지역성 책무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지만,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이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판단에 따라 배점이 조정되었다.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는 동 항목보다는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 항목의 배점이 다소 축소되었다. 이밖에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는 동 항목에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렇게 해서 ‘편성의 적정성’ 항목은 ‘ 자체 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 비용 평가’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의 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 방송운영 영역

방송운영 영역에서는 ‘경영의 적정성’ 항목의 세부 항목을 추가하고, ‘지역사회 기여도’의 세부 항목을 간소화하였으며, ‘지역시청자 권익보호’의 세부 항목을 축소하고 배점을 확대하였다.

① ‘경영의 적정성’의 세부 항목 추가

‘경영의 적정성’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 내용은 지역방송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민을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세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방송 평가와 동일한 항목을 적용함으로써 측정을 간소화하였다. 한편 ‘영업이익대비 배당 비율 평가’ 항목의 배점은 120점에서 50점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재무의 건전성 종합평가’로 수정하였다. 지역방송에서 이익 배당이 본사의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당 과정에서 지역방송사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방송 평가와 동일한 항목으로 수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자료제출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좀 더 타당하고 신뢰할만한 척도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방송사 구성원의 재교육 참여도를 중요한 평가 척도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구성원 재교육 활성화 평가’ 항목을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로 수정하였다. 한편 ‘제작 인력 평가’는 현행과 동

일하게 유지하면서 배점을 소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개선 과정을 거쳐 동 항목의 세부 항목은 3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경영의 적정성’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재무의 건전성 종합평가’,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 ‘제작 인력 평가’,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이다.

② ‘지역사회 기여도’의 세부 항목 간소화

‘지역사회 기여도’의 세부 항목 중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 항목은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판단하여 이동하였다. 또한 ‘지역 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 항목은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에서 평가하던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과 함께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항목에 통합하여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가 ‘지역사회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배점을 3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역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3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개선 과정을 통해 동 항목의 세부 항목은 4개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와 ‘재난 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의 2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③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항목 조정 및 배점 확대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항목에서는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의 배점을 기존의 3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시청자 의견 수렴의 적절성 평가’ 및 ‘시청자 불만 처리의 적절성 평가’의 통합하여 평가하면서 배점을 소폭 확대하였다. 방송평가에서 이들 두 세부항목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평가 결과와 연동하여 측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개선 과정을 통해 동 항목의 세부 항목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으며 배점이 90점에서 120점으로 확대되었다.

3. 지역방송 지역성지수 개선(안)

앞에서 설명한 지역방송 지역성지수의 개선내용을 모두 담은 종합적인 표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표 5-1> 및 <표 5-2> 참고). 현행 배점과 배점 개선안, 현행 세부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신규항목·이동항목·수정항목·통합항목 등이 괄호 안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표 5-1>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 (500점) : 현행 평가 내용 및 개선안의 비교

※(◆) 표시는 방송평가 기준 준용 항목임

평가항목	현행배점 (500)	배점개 선안 (500)	현행		개선안		개선 내용 및 사유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항목 배점	
방송 프로 그램의 우수성	100	180	(1)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평가(◆) o 방송대상,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등 관련 수상횟수	50	(1) (현행 동일) (◆)	50	
			(2)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실적 o 국내 판매금액 x 100% + 해외 수출금 액 x 150%	50	(2) (현행 동일)	50	
			-		(3) 자체 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 o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용 / 전체 영업비용	80	o 이동 - (현행 12번→개선안 3번)
지역 밀착성 확보노력	200	220	(3)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관련 업체·기 관 등과의 협력실적 o ① 참여 프로그램 편수 ② 협력 프로 젝트 예산 총액	110	-	-	o 통합(현행 3번→개선안 13번) -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평가항목	현행배점 (500)	배점개 선안 (500)	현행		개선안		개선 내용 및 사유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항목 배점	
			(4)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o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시간 / 자체편성 총시간	45	(4) (현행 동일)	50	o 배점 조정(확대)
			(5) 주시청시간대의 지역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o 주시청시간대 자체제작 편성시간 / 주시청시간대 총시간	45	-		o 삭제 - 본사의 편성정책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삭제
			-		(5) 편성제작의 지역민 의견 수렴 o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단계 지역민 의견수렴 정도 평가	60	o 신설 - 지역밀착성 확보 지표 추가 필요성 반영
					(6)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o 지역 MBC : 자체제작비율 15% 만점, 9등급 평가	110	o 변경 - 현행 6번과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추가 평가

평가항목	현행배점 (500)	배점개 선안 (500)	현행		개선안		개선 내용 및 사유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항목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민방 : 자체제작비율 20% 만점, 9등급 평가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편성의 적정성	200	100	(6)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시간 / 총 프로그램 편성시간 	11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현행 6번→개선안 6번)
			(7) 자체 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 비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 프로그램 비용 / 구매 프로그램 시간 	60	(7) (현행 동일)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점 조정(확대)
			(8)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편성시간 / 총 프로그램 편성시간 	30	(8) (현행 동일) (◆)	30	-

<표 5-2> 방송 운영 영역 (500점) : 현행 평가 내용 및 개선안의 비교

※(◆) 표시는 방송평가 기준 준용 항목임

평가항목	현행배점 (500)	배점개 선안 (500)	현행		개선안		개선 내용 및 사유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항목 배점	
경영의 적정성	240	230	(9) 영업이익대비 배당 비율 평가 ○ 배당액 3개년 평균 / 영업이익 3개년 평균	120	(9) 채무의 건전성 종합평가(◆) ○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평 가	50	○ 변경 및 배점 조정(축소) - 본사의 정책에 따라 배당을 실 시하여 지역방송사 역할 미미
			(10) 구성원 재교육 활성화 평가(◆) ○ ①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 ② 1인당 교육비 ③ 교육시간	80	(10)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 성화 평가 (◆) ※ 평가내용에 교육 참여율 추 가	80	○ 추가 - 평가내용에 교육 참여율 추가
			(11) 제작 인력 평가 ○ 프로그램 제작인력(방송직) 수 / 전체 임직원 수	40	(11) (현행 동일)	50	○ 배점 조정(확대)
			-		(12)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50	○ 신설

평가항목	현행배점 (500)	배점개 선안 (500)	현행		개선안		개선 내용 및 사유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항목 배점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 규제 등을 평가		- 방송의 공정성 및 자율성 관련 지표 추가
지역 사회 기여도	170	150	(12)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 ○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용 / 전체 영업비용	80	-	-	○ 이동 (현행 12번→개선안 3번) -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으로 조정
			(13)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 ○ 소재 지역대학 출신 임직원 수 / 전체 임직원 수	30	-	-	○ 통합 - 현행 13번→개선안 13번
			(14)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 ① 지역사회 및 문화 발전에 사용한 금액, ② 세부 활동 내역	30	(13) (현행 동일) ※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관련 업체·기관 등 기관 협력 실적, 지역대학 출신 고용 평가 통합	90	○ 통합 및 배점 조정(확대) - 현행 3번, 13번→개선안 13번
			(15) 재난 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30	(14) (현행 동일) (◆)	60	○ 배점 조정(확대)

평가항목	현행배점 (500)	배점개 선안 (500)	현행		개선안		개선 내용 및 사유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항목 배점	
			o 재난방송 편성실적, 매뉴얼 마련, 인력운영 등 종합평가				
지역 시청자 권익 보호 (90)	90	120	(16)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 o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의견활 용 등 종합평가	30	(15)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	50	o 배점 조정(확대)
			(17) 시청자 의견수렴 적절성 평가 (◆) o 의견수렴 전담부서 설치, 결과 공개 등 종합평가	30	(16)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 가 (◆) o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 축 여부 및 절차, 방통위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70	o 통합 및 배점 조정(확대) - 방송 평가 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항목 통합
			(18) 시청자 불만처리 적절성 평가 (◆) o 시청자 불만처리 결과, 전담부서 운영 등 종합평가	30			

이상의 논의를 거쳐 도출된 지역방송 지역성지수의 개선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3>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 개선안 (500점)

평가항목	배점 (500)	세부 평가항목		비고
		평가 내용	배점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180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50	방송평가 항목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	50	재산상황공표집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	80	방송산업실태 조사보고서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220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50	방송사 제출
		편성 제작의 지역민 의견 수렴	60	방송사 제출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110	방송평가 항목
편성의 적정성	100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	70	방송산업실태 조사보고서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30	방송평가 항목

<표 5-4> 방송 운영 영역 개선안 (500점)

평가항목	배점 (500)	세부 평가항목		비고
		평가 내용	배점	
경영의 적정성	230	재무의 건전성 종합평가	50	방송평가 항목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	80	방송평가 항목 (+방송사 제출)
		제작 인력 평가	50	방송사 제출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50	방송평가 항목
지역사회 기여도	150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	90	방송사 제출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60	방송평가 항목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	120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50	방송평가 항목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	70	방송평가 항목

제6장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배점 및 측정방법

제1절 지역성 지수 배점 개선방안

1. 현행 지역성 지수 배점 구성

현재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는 총점 1,000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송내용 및 편성영역이 500점 배점되어 있고, 방송운영 영역이 500점 배점되어 있다. 방송내용 및 편성 분야의 500점은 다시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100점), 지역밀착성 확보노력(200점), 편성의 적정성(2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운영 분야의 500점은 경영의 적정성(240점), 지역사회 기여도(170점), 시청자 권익보호(90점)로 구성되어 있다.

<표 6-1>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 배점 현황

평가항목	배점 (500)	세부 평가항목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100	-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50)
		-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50)
지역 밀착성 확보 노력	200	-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110)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45)
		- 주시청 시간대 지역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45)
편성의 적정성	200	-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110)
		-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60)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30)

<표 6-2> 방송운영 영역 배점 현황

평가항목	배점 (500)	세부 평가항목
경영의 적정성	240	- 영업이익대비 배당 비율 평가(120)
		- 구성원 재교육 활성화 평가(80)
		- 제작 인력 평가(40)
지역사회 기여도	170	-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80)
		- 지역 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30)
		-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30)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30)
지역 시청자 권의 보호	90	-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30)
		- 시청자 의견 수렴의 적절성 평가 (30)
		- 시청자 불만 처리의 적절성 평가(30)

2. 현행 지역성 지수 배점의 쟁점

1) 방송내용 및 편성영역 배점의 쟁점

방송내용 및 편성영역에는 세 가지의 평가항목이 있다. 첫째는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둘째는 ‘지역밀착성 확보노력’, 셋째는 ‘편성의 적정성’이다. 이 세 항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100점, 200점, 2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방송의 경쟁력의 근간은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항목이 ‘지역밀착성 확보노력’, ‘편성의 적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점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에서는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평가’(50)에 대한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항목은 지역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 때문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50)’은 상대적으로 배점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방송의 경우 유통할 프로그램 수가 적고, 방송사의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역밀착성 확보노력’ 평가항목에서는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110)’에 대한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지역방송이 지역 사회와 밀착성 및 상생 협력하고 있는지의 과정을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작관련 업체와의 관련성보다는 지역의 기관 등과의 협력방안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지역에는 제작관련 업체가 많지 않아 지역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와 얼마나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시청 시간대 지역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45)’ 항목에 대해서는 배점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지역방송이 중앙 기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45)’ 항목도 배점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지역시청자들의 지역방송에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지역성 구현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편성의 적정성’ 평가항목에서는 ‘자체 제작 편성 비율 평가(110)’ 항목의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지역성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30)’의 경우 방송평가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항목이고, 이미 방송사들이 장애인방송 편성관련 고시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점수를 높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 방송운영 배점의 쟁점

방송운영 영역에는 세 가지의 평가항목이 있다. 첫째는 ‘경영의 적정성’, 둘째는 ‘지역사회 기여도’, 셋째는 ‘지역시청자 권익보호’이다. 이 세 항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0, 170, 9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평가항목에서는 ‘경영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보호’의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배점이 높다는 것이다.

‘경영의 적정성’ 평가항목에서는 ‘영업이익대비 배당비율 평가(120)’항목의 평가에서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지역민방이 여전히 고배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낮춰야 한다는 측에서는 주로 지역민방에 해당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역MBC와는 관련성이 적어 중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항목은 지역민방과 지역MBC를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80)’항목도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역방송은 규모가 영세하여 구성원의 재교육이 자주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항목에서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30)’의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지역방송과 지역과 밀착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기 때문이다.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30)’의 경우 최근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배점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있다. 방송사의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배점을 높여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시청자 권익보호’ 평가항목에서는 ‘시청자 의견수렴의 적정성(30)’과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30)’ 항목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지역 시청자의 의견수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배점이 낮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3. 지역성 지수 배점 구성의 개선안

평가항목의 배점은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과 ‘방송운영 영역’의 배점을 기존과 동일하게 500점씩 그대로 배정했다.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과 ‘방송운영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 개선안

‘방송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평가항목은 100점에서 18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80점)’라는 세부 평가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지역밀착성 확보노력’ 평가항목은 200점에서 2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이라는 세부 평가항목이 운영영역으로 이동하고, 대신 ‘편성제작의 지역시청자의견 수렴’이라는 세부 평가항목이 신규로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편성의 적정성’평가항목은 200점에서 10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많은 배점이 할당된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세부 평가항목이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영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편성의 적정성이 지역성 구현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6-3> 방송 편성 및 내용 영역의 배점 개선안

평가 항목	현행 배점 (500)	배점 개선안 (500)	현행 세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100	180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50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50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	50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	50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신규항목)	80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200	220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	110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50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45	편성제작의 지역시청자의견 수렴(신규항목)	60
			주시청 시간대 지역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45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110
편성의 적정성	200	100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110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	60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	70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30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30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평가항목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 배점도 100점에서 18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방송 운영영역’의 항목이었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을 이동하여 포함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실적’이라는 세부 평가항목의 경우 중요성이 이전과 동일하다고 판단해 50점을 그대로 유지했다. ‘자체 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도 기존의 ‘방송운영 영역’에서의 80점 배점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역 밀착성 확보노력’ 평가항목의 경우, ‘지역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세부 평가항목은 45점에서 50점으로 약간 상향 조정했으나, 사실상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편성제작의 지역시청자 의견 수렴’이라는 세부 평가항목은 새로 포함된 항목으로 60점을 배점했다. 이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지역시청자의 의견수렴을 얼마나 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지역방송의 지역밀착성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도 기존의 110점의 배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역밀착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편성의 적정성’ 평가항목의 경우, ‘자체편성 프로그램 분당 구매비용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은 60점에서 70점으로 배점을 높였다. 이는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 구매비용이 해당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역방송이 방영하는 구매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 지역시청자의 외면을 지적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은 기존의 배점인 30점을 그대로 유지했다.

2) 방송 운영 영역’의 배점 개선안

방송운영 영역의 배점은 ‘경영의 적정성’ 평가항목의 배점을 약간 낮춰 240점에서 230점으로 조정했다. 이 평가항목의 경우, 원래 3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4개의 항목으로 조정했다. 따라서 기존의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이 약간 조정되었다.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항목의 배점은 170점에서 150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평가항목이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이 평가항목에 속한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 평가항목은 90점에서 120점으로 배점이 높아졌다. 이는 지역 시청자에 대한 지역방송의 배려와 관심이 지역성 구현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표 6-4> 방송 운영 영역의 배점 개선안

평가항목	현행 배점 (500)	배점개 선안 (500)	현행 세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	
경영의 적정성	240	230	영업이익대비 배당 비율 평가	120	재무의 건전성 종합평가	50
			구성원 재교육 활성화 평가	80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
			제작 인력 평가	40	제작 인력 평가	50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평가	50
지역사회 기여도	170	150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	80		
			지역 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	30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30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90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30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60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90	120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	30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	50
			시청자 의견 수렴의 적절성 평가	30		
			시청자 불만 처리의 적절성 평가	30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	70

'경영의 적정성' 평가항목은 3개 세부 평가항목에서 4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늘어났다. '영업이익 대비 배당비율'이라는 세부 평가항목 대신 추가된 '재무의 건전성 및

종합평가'는 120점에서 50점으로 낮아졌다. 이는 배당에 대한 평가는 매 3-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재허가에서 평가하고 있고, 주로 지역민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어서 지역성 구현을 평가는 항목으로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도 지역방송의 재무에서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을 평가해 전체적인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의 경우 80점의 배점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지역방송 종사자의 재교육이 중요하나 실제 제작인력 등이 부족하여 재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실 등을 함께 고려했다. '제작인력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은 40점에서 50점으로 배점을 높였다.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충분한 제작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은 방송의 공정성 및 자율성에 관한 지표로 새로 추가해 50점을 배점했다.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항목은 4개에서 2개로 줄었다. 지역방송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서의 적절성을 고려해,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이 '방송내용 및 편성영역'으로 이동했고,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이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이 높아져, 평가 배점은 170점에서 150점으로 약간 낮아졌다.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은 30점에서 90점으로 배점을 대폭 높였다. 이는 지역방송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운영하는지가 지역성 구현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방송이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지역방송의 역할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은 30점에서 60점으로 배점을 높였다. 이는 산불 등 국지적으로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방송이 해당지역에서 지역민을 위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 평가항목은 90점에서 120점으로 배점을 확대하였다.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은 30점에서 50점으로 배점을

높였다.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의견수렴의 창구로서 시청자위원회를 적절이 잘 운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라는 세부 평가항목은 '시청자 의견수렴의 적절성 평가'와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의 두 세부 평가항목을 한 항목으로 합친 항목이다. 이전의 두 가지로 분리했을 때에 각각 30점으로 총 60점이었으나 이 두 항목을 합하여 70점으로 배점해 점수를 높였다. 이는 그만큼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2절 지역성 지수 항목별 평가방법 개선방안

1. 현행 항목별 평가방법

1) 방송평가 항목 활용

현재 지역성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18개의 항목 중에서 8개의 항목이 방송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항목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성 지수에서도 방송평가 항목에서 평가하고 있는 항목과 동일한 항목이 있어, 이들 항목의 경우 방송평가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표 6-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 8개 항목의 배점을 종합하면, 1,000점 만점에 390점을 차지하고 있다. 즉 39%의 배점을 방송평가 항목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항목의 경우, 평가의 세부기준은 방송평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점의 점수가 다른 항목의 경우 동일비율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있다.

<표 6-5> 방송평가 항목을 활용하는 항목의 구성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390점)	방송평가 배점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①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50	30
편성의 적정성	⑥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평가	110	60
	⑧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30	60
경영의 적정성	⑩ 구성원 재교육 활성화 평가	80	20
지역사회 기여도	⑮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30	80
지역시청자 권의 보호	⑯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	30	30
	⑰ 시청자 의견수렴 적절성 평가	30	30
	⑱ 시청자 불만처리 적절성 평가	30	30

2) 방송평가 항목 이외의 평가항목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중에서 방송평가 항목 이외의 항목의 경우 18개의 항목 중에서 10개 항목에 해당한다. 이들 항목의 총 배점은 1,000점 중에서 610점으로 61%를 차지한다. 이들 항목의 경우 지역성 지수 평가를 위해 별도로 개발한 항목으로 독자적으로 측정기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방송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방송사의 최고실적을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표 6-6> 방송평가 항목 이외의 평가 항목의 구성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610점)	자료 출처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②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	50	재산상황 공표집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③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	110	방송사 제출
	④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45	방송사 제출
	⑤ 주시청시간대 지역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	45	방송사 제출
편성의 적정성	⑦ 자체 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	60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경영의 적정성	⑨ 영업이익대비 배당비율 평가	120	전자공시 시스템
	⑪ 제작 인력 평가	40	방송사 제출
지역사회 기여도	⑫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	80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⑬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	30	방송사 제출
	⑭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30	방송사 제출

2. 방송내용 및 편성영역 평가방법 개선안

1)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500점)

방송내용 및 편성영역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 및 활용자료는 <표 6-7>과 같다. 활용자료는 세부 평가항목별 지수 측정 시 참고할 자료를 의미한다. 이들 자료는 방송평가 자료, 방송사 제출자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공식자료인 재산상황 공표집,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한다. 재산상황공표집,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를 활용하는 이유는 지역방송사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표 6-7> 방송내용 및 편성영역의 측정자료 활용 방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활용 자료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150)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50	방송평가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	50	재산상황 공표집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	80	방송산업실태 조사보고서
지역 밀착성 확보 노력 (220)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50	방송사 제출
	편성제작의 지역민 의견 수렴	60	방송사 제출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	110	방송사 제출
편성의 적정성 (100)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	50	방송산업실태 조사보고서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30	방송평가

2)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측정 방법

(1)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항목 측정

①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방송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평가는 방송평가 자료를 활용한다. 방송평가 항목의 내용영역 중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방송평가에서는 배점되어 있는 점수를 활용하여 그 비율대로 평가한다. 이 항목은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을 상대 평가하여 적용한다.

②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

지역방송사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 국내외에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역방송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산상황공표집의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이전의 평가와 동일하게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판매 금액'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한다.

③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

지역방송사 프로그램 제작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지역방송사가 자체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고, 이전의 평가와 동일하게 80점을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비율'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한다.

(2)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①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지역방송사가 편성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지역의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편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방송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전 평가와 동일하게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시간 비율’을 고려하여 편성 실적을 상대 평가한다.

② 편성제작의 지역시청자의견 수렴

지역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과정에서 지역 시청자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는지를 평가한다. 방송사 제출 자료를 활용하며,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단계에서 지역시청자의 의견 수렴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한다.

③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평가

지역방송이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편성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한다. 이전과 동일하게 방송사 제출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9등급으로 평가한다. 지역MBC의 경우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하고, 지역민방의 경우 자체제작비율 20%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3) 편성의 적정성

①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

지역방송이 자체 제작이외에 자체 편성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양질의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방송하는지를 평가한다.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자료를 활용하며, 지역방송이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한다.

②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지역방송이 방송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을 얼마나 편성하여 지역민에서 방송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방송평가 자료를 활용하고, 방송평가의

편성영역 중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이와 같은 세부 항목별 평가 항목과 측정 척도를 정리하면, <표 6-8>과 같다.

<표 6-8> 방송내용 및 편성영역의 평가 항목 및 척도 개선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척도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180)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50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 평가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 실적	50	- '자체제작 프로그램 판매 금액'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	80	-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비율'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220)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50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시간 비율'을 고려하여 편성 실적을 상대 평가
	편성제작의 지역시청자의견 수렴	60	-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단계에서 지역시청자의 의견 수렴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110	- 방송사 제출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9등급으로 평가
편성의 적정성 (100)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	70	- 지역방송이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30	- 자막방송 편성비율 - 수화방송 편성비율 -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3. 방송운영 영역 평가방법 개선안

1) 방송운영 영역 평가(500점)

방송운영 영역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 및 활용자료는 <표 6-9>과 같다. 활용자료는 세부 평가항목별 지수 측정 시 참고할 자료를 의미한다. 이들 자료는 방송내용 및 편성 영역에서와 동일하게 방송평가 자료, 방송사 제출자료 등을 활용한다. 방송운영 영역의 경우, 대부분 방송평가 자료를 활용하고 일부인 3개 항목만 방송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활용한다.

<표 6-9> 방송운영 영역 항목의 배점 및 활용자료 방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활용 자료
경영의 적정성 (230)	재무의 건전성 종합평가	50	방송평가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	80	방송평가 + 방송사 제출
	제작 인력 평가	50	방송사 제출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평가	50	방송평가
지역사회 기여도 (150)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90	방송사 제출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60	방송평가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120)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	50	방송평가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평가	70	방송평가

2)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측정 방법

(1) 경영의 적정성

① 재무의 건전성 종합평가

지역방송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출액 증가율의 4개 재무비율에 대해 평가한다. 이들 수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 기업 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전 산업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σ)를 구하여 비교 평가하는 형태로 배점한다. 이는 방송평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과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점수 배점 구간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②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

지역방송이 구성원들이 지역방송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분에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방송평가 항목 중에서 운영영역 중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의 척도를 활용한다. 아울러 방송사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평가하고 배점한다. 구성원 재교육 참여율 평가하고,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한다. 아울러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의 비율로 평가하고,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위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정도 등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제작 인력 평가

지역방송사가 채용하고 있는 인력 중에서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 제작직의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한다. 방송사 제출 자료를 활용하며, 전체 방송사 종사 인력 중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여 배점한다.

④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 규제제도 운영 종합평가

지역방송이 얼마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하는 지를 평가한다. 지역방송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자율규제 제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평가하며, 방송평가 항목을 활용한다. 방송평가의 내용영역 중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제도 운영

종합 평가'의 항목의 결과를 반영한다. 배점의 경우, 방송평가에서 '지역방송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 항목에 배점된 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지역사회 기여도

①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지역방송이 지역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방송사 제출 자료를 활용하고,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에 기여하고 활동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배점한다.

②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지역방송이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방송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방송평가 자료를 활용하며, 편성영역 중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 등을 활용하여 배점한다.

(3)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①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평가

지역방송의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시청자 위원회의 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방송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편성영역 중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의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시청자위원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배점한다.

②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지역방송이 시청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충실하게 듣고, 방송사 운영에 실제로 적용하는

지, 그리고 시청자들이 제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처리하는지를 평가한다. 방송평가 자료를 활용하며, 내용영역 중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평가’ 항목의 결과를 활용한다.

이와 같은 세부 항목별 평가 항목과 측정 척도를 정리하면, <표 6-10>와 같다.

<표 6-10> 방송운영 영역의 평가 항목 및 척도 개선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활용 자료
경영의 적정성 (230)	재무의 건전성 종합평가	50	- 방송사업자의 3개년 평균 영업이익 대비 3개년 평균 배당 비율을 산출하여, 최저점을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누어 배점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	80	- 직무와 연관 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아울러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의 비율로 평가하고,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위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도를 평가
	제작 인력 평가	50	- 전체 인력 중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비율 평가하여 배점
	지역방송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	50	- 지역방송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자율규제제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평가
지역사회 기여도 (150)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90	-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실적,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배점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60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55)’의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 등을 활용하여 배점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120)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	50	- 시청자위원회 운영, 시청자위원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배점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평가	70	-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 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 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 평가 하여 배점

제 7 장 결 론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는 지역방송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지역방송을 지원하되, 일정한 수준의 지역성을 구현하는 방송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는 지역방송이 방송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 또는 지역방송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가 지역방송을 평가하여, 서열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지수 활용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는 지역방송 스스로 해당 지수를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인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방송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방송의 평가항목에는 지역방송이 지역성 구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 활용은 지역방송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정부는 지역방송의 지원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할 뿐이다.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는 지난 3년간 지역방송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평가항목의 적정성, 평가의 적절성 등에 대해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서 평가항목 및 배점, 그리고 세부 측정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방송 지수가 보다 지역성 구현을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척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항목을 삭제하고, 일부항목은 추가했으며, 각 항목의 배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측정방식도 지역방송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송평가 항목을 많이 활용했고, 부족한 부분만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의 개선안은 세부 평가항목의 숫자를 이전의 18개에서 16개로 축소하였다. 8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4개로 통합하였고, 2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신설한 세부 평가항목은 지역방송의 밀착성 확보를 위한 항목과 지역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항목이다. 배점에 있어서도 '방송 내용 및 편성영역'과 '방송 운영영역

역'이라는 두 영역의 배점을 각각 500점으로 그대로 유지했으나 각각의 영역 내에서는 배점을 조정했다. '방송 내용 및 편성영역'에 있어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부분의 배점을 높였고, 대신 편성의 적정성 부분은 배점을 낮췄다. 그리고 '방송 운영영역'에서는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약간 낮췄고,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 부분을 약간 높였다.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개선안은 최근 지역방송의 환경과 운영여건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방송의 재정적인 어려움, 프로그램 제작의 부족, 지역 시청자 권익 증진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이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구현해야 할 지역성을 적절히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평가의 기본 원칙인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여 반영하였다. 즉, 지역방송의 지역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지표로서, 어느 누가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척도의 적정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지역방송의 서비스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은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이 지역방송의 지역성을 적절히 평가하는 지수로서 역할을 하여 지역방송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철수, & 김덕모. (2017).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45-52.
- 김영수, & 최진호. (2015).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대한 지역방송 종사자의우선순위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59(6), 446-474.
- 김영수. (201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의 의미와 지역방송의 대응전략.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방송경영과 마케팅 분과. 광주: 광주대학교.
- 김재영, & 양선희. (2015). 지역방송 연구에 관한 종합적·분석적 메타분석. 언론과학연구, 15(1), 162-194.
- 김재영, & 한상헌. (2015).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향한 기대와 현실. 언론과학연구, 15(3), 67-96.
- 김충식. (2015). 지역 방송사의 경영위기 및 사업다각화가 방송의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1), 247-278.
- 방송통신위원회. (2012).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 분석. 방통융합미래 전략체계연구 지정 2012-17
- 방송통신위원회. (2017). 2017년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 (2017) 2017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 변상규. (2016). 지역방송의 가치추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산업경제연구, 29(6), 2651-2674.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에 관한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4-1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실효적 시행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5-16
- 조항제. (2015). 로컬리즘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언론학연구, 19(3), 191-223.
- 주정민. (2004).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31-348.

● 저 자 소 개 ●

배 진 아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
- 현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교수

주 정 민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 현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8-16

지역방송 지역성 지수 평가 개선방안 연구

2018년 12월 31일 인쇄

2018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지역성지수 평가 세부기준
방송내용 · 편성 / 운영 영역

목 차

□ 내용·편성 영역

1.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1
2.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실적 2
3.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 4
4.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6
5. 편성제작의 지역시청자 의견 수렴 8
6.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 11
7.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 12
8. 장애인 시청 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14

□ 운영 영역

9. 재무의 건전성 종합평가 15
10.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 16
11. 제작 인력 평가 19
12.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운영 종합 평가 21
13.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22
14.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26
15.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활용의 적정성 평가 27
16.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 28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가. 평가항목

-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
 - 시상기관에 따른 프로그램 수상실적의 상대평가
 - * 방송평가의 평가척도 준용

나. 배점방식

- 방송프로그램 수상실적을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평가, 매체별*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최고점을 기준으로 9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 (*) 매체구분 : 지상파TV(중앙)/지상파TV(지역)/지상파R(일반)/음악FM/SO·위성/중편 PP/보도PP/지상파DMB-TV/지상파DMB-R
 - ※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는 제외

평가등급의 비율 (9등급)	배점 (50점)
87.5% 이상	50점
75% 이상 ~ 87.5% 미만	45점
62.5% 이상 ~ 75% 미만	40점
50% 이상 ~ 62.5% 미만	35점
37.5% 이상 ~ 50% 미만	30점
25% 이상 ~ 37.5% 미만	25점
12.5% 이상 ~ 25% 미만	20점
12.5% 미만	15점
0%	1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평가기간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수상실적 인정범위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대상(大賞, 창의발전, 사회문화, 지역발전, 뉴미디어, 시청자제작, 라디오 프로그램상 및 특별상) 등에 대한 수상실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상실적
 - 방송유관단체 : 전국규모의 방송유관단체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시상제도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연간 및 분기, 월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 및 개인(제작부문에 한함)에 대한 수상실적
 - 시청자단체 : 시청자단체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시상제도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연간 및 분기, 월간 단위의 방송프로그램 및 개인(제작부문에 한함)에 대한 수상실적
 - 기 타 : 해외 우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명망 있는 언론단체의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기타 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 등
- 대상 프로그램 및 수상기간에 따른 원칙에 의거하여 배점함
 -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수상실적은 개별 장르에 한정된 수상실적에 우선함
 - 연간단위의 수상실적은 분기 및 월간단위의 수상실적에 우선함
- 자체제작이 50%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자체제작 프로그램 수상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수상실적 점수의 50%를 가산하여 반영함
- 자체제작이 아닌 타 방송사의 우수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수상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상실적 점수의 50%를 반영함
- 동일한 프로그램이 다수의 시상주체로부터 수상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상실적 점수 1회만 인정함
- 개인상 부문을 포함함(단, 제작부문에 한함)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등 유통실적

가. 평가항목

-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나. 배점방식

- ‘자체 제작 프로그램 판매 금액’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함

평가척도	배점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금액	50점

※ 국외 판매 실적의 산정 방식(‘방송평가 가산점 평가 방식’ 참조): 프로그램 국외 판매 실적의 경우 해당 판매 실적점수의 50%를 가산

$$\text{프로그램 수출 산정 점수} = (\text{국내 프로그램 판매금액} \times 100\%) + (\text{해외 프로그램 수출금액} \times 150\%)$$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자체 제작 프로그램 개념 정의
 - 방송사가 자체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칭하며, 지역방송사끼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제작 프로그램만 자체제작에 포함
- 방송사별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실적(금액) 결과를 평가함

- 국외 판매실적의 경우 국내 판매실적 대비 50%의 가산점을 부여함
-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판매 금액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함
- 해외 수출금액 달리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함

※ 산정표

평가등급의 비율 (9등급)	배점(50점)
87.5% 이상	50점
75% 이상 ~ 87.5% 미만	43.75점
62.5% 이상 ~ 75% 미만	37.5점
50% 이상 ~ 62.5% 미만	31.25점
37.5% 이상 ~ 50% 미만	25점
25% 이상 ~ 37.5% 미만	18.75점
12.5% 이상 ~ 25% 미만	12.5점
12.5% 미만	6.25점
0%	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

가. 평가항목

- 지역사회 기여도

나. 배점방식

-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비율’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함

평가척도	배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용 / 전체 영업비용)	8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자체제작 프로그램 유형
 -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 지역방송사와 중앙방송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 지역방송사와 지역방송사간의 공동제작 프로그램, 지역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

※ 산정표

평가등급의 비율 (9등급)	배점(80점)
87.5% 이상	80점
75% 이상 ~ 87.5% 미만	70점
62.5% 이상 ~ 75% 미만	60점
50% 이상 ~ 62.5% 미만	50점
37.5% 이상 ~ 50% 미만	40점
25% 이상 ~ 37.5% 미만	30점
12.5% 이상 ~ 25% 미만	20점
12.5% 미만	10점
0%	0점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

가. 평가항목

-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나. 배점방식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비율'을 고려하여 참여 프로그램 편성 실적을 평가함

평가척도	배점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시간 비율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 자체편성 총시간)	5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개념 정의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 방송제작을 업(業)으로 하지 않는 자연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시간 산정방식
 - 자체 편성시간 대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시간의 비율로 방송사별 상대 평가

※ 산정표

평가등급의 비율 (5등급)	배점(50점)
80% 이상	50점
60% 이상 ~ 80% 미만	40점
40% 이상 ~ 60% 미만	30점
20% 이상 ~ 40% 미만	20점
20% 미만	10점
0%	0점

편성제작의 지역시청자 의견 수렴

가. 평가항목

- 지역민의 의견 수렴

나. 배점방식

- 정규편성, 수시편성, 프로그램 신설 또는 내용 변화 등의 시기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각 방송사별로 절대 평가함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60점)
정규편성	- 봄철 정규개편시 지역민 의견수렴 여부	15점
	- 가을철 정규개편시 지역민 의견수렴	15점
수시편성	- 수시편성시 지역민 의견수렴	15점
프로그램 신설 또는 내용 변화	- 프로그램 신설 및 내용 변경시 지역민 의견수렴	15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정규 및 수시 편성시 지역민의 의견수렴은 인터넷 게시판, 대상층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지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는지를 평가함.
 - 기본점수 9점을 기준으로 게시판 의견수렴시 2점, 대상층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시 4점, 지역민 여론조사시 6점을 추가로 부여함
- 프로그램 신설 또는 내용변화 시에도 인터넷 게시판, 대상층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지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는지를 평가함.

- 기본점수 9점을 기준으로 게시판 의견수렴시 2점, 대상층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시 4점, 지역민 여론조사시 6점을 추가로 부여하되, 신설한 혹은 내용 변화한 프로그램 총수의 평균점수를 반영함

※ 봄철, 가을철, 수시편성, 프로그램 신설 또는 내용변화가 없을 시에는 각각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기본점수로 11점을 부여

※ 산정표

1. 정규 편성 시 지역민의 의견 수렴(봄철, 가을철 각 15점)

항목	점수
기본점수	9점
게시판 의견수렴	2점
대상층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4점
지역민 여론조사	6점
합계	최대 15점

2. 수시 편성 시 지역민의 의견 수렴

항목	점수
기본점수	9점
게시판 의견수렴	2점
대상층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4점
지역민 여론조사	6점
합계	최대 15점

3. 프로그램 신설 또는 내용변화 시 지역민의 의견 수렴

항목	점수
기본점수	9점
게시판 의견수렴	2점
대상층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4점
지역민 여론조사	6점
합계	최대 15점

지역방송사 자체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비율 평가

가. 평가항목

- 편성의 적정성
 - 자체제작 편성비율 평가
 - * 방송평가의 평가척도 준용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110점
자체제작 비율 평가	50점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평가	6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지역방송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평가
 - 지역 MBC(15%), 지역민방(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 지역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이라 함은
 - 해당 지역방송사(총국)가 자체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칭하나 지역방송사(총국)끼리의 공동제작* 프로그램도 포함
 - * 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양질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 장려를 위하여 전국에 방송된 지역 자체제작물 또는 지역 공동제작물은 편성시간의 50%를 가산하여 인정함

○ 지역 자체제작물 편성시간으로 산정되는 지역 공동제작물의 경우도 전국에 방송되었을 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함

○ 지역 MBC의 평가 기준

- 자체제작비율 15%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자체제작 비율	15% 이상	15%미만 ~ 13.12%이상	13.12%미만 ~ 11.25%이상	11.25%미만 ~ 9.37%이상	9.37%미만 ~ 7.5%이상	7.5%미만 ~ 5.62%이상	5.62%미만 ~ 3.75%이상	3.75%미만 ~ 1.87%이상	1.87% 미만
지역 MBC	50점	43.75점	37.5점	31.25점	25점	18.75점	12.5점	6.25점	0점

○ 지역 민방의 평가 기준

- 자체제작비율 20%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자체제작 비율	15% 이상	15%미만 ~ 13.12%이상	13.12%미만 ~ 11.25%이상	11.25%미만 ~ 9.37%이상	9.37%미만 ~ 7.5%이상	7.5%미만 ~ 5.62%이상	5.62%미만 ~ 3.75%이상	3.75%미만 ~ 1.87%이상	1.87% 미만
지역민방	50점	43.75점	37.5점	31.25점	25점	18.75점	12.5점	6.25점	0점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이란

- 허가권역 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룬 프로그램을 의미함
- 편성시간 량 산정 시, 본방(초방) 또는 순환방송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시간 인정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평가 기준

-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의 최고 편성 실적*을 기준으로 9등급 평가

*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는 제외

평가등급의 비율 (9등급)	배점
87.5% 이상	60점
75% 이상 ~ 87.5% 미만	52.5점
62.5% 이상 ~ 75% 미만	45점
50% 이상 ~ 62.5% 미만	37.5점

37.5% 이상 ~ 50% 미만	30점
25% 이상 ~ 37.5% 미만	22.5점
12.5% 이상 ~ 25% 미만	15점
12.5% 미만	7.5점
0%	0점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비용 평가

가. 평가항목

- 편성의 적정성

나. 배점방식

- '분당 구매비용'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함

평가척도	배점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분당 구매 비용 (구매 프로그램 비용 / 구매 프로그램 시간(분))	7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각 사업자의 구매 프로그램 시간 대비 구매 프로그램 비용을 산출하여 평가함
 -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최고점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구매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 중 최저 평가점수로 대치함

※ 산정표

평가등급의 비율 (9등급)	배점(70점)
87.5% 이상	70점
75% 이상 ~ 87.5% 미만	61.25점

62.5% 이상 ~ 75% 미만	52.5점
50% 이상 ~ 62.5% 미만	43.75점
37.5% 이상 ~ 50% 미만	35점
25% 이상 ~ 37.5% 미만	26.25점
12.5% 이상 ~ 25% 미만	17.5점
12.5% 미만	8.75점
0%	0점

장애인 시청 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가. 평가항목

- 편성의 적정성 평가(방송편성의 평가척도 준용)

나. 배점방식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자막방송, 한국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의 편성 실적을 평가
 -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 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편성비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하는 장애인 방송실적을 근거로 평가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30점)
자막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한 연도별/유형별 편성비율 목표치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	12점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		6점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12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정의
 - 자막방송 프로그램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청각메시지를 전자 코드 형태로 변환 전송하여, TV화면에 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 한국수어방송 프로그램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 안에 또 하나의 분리된 화면 (Picture in Picture)을 통해 프로그램의 청각메시지를 수화로 통역하는 서비스를 실시

하는 프로그램

- 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 :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프로그램 인물들의 행동, 의상, 몸짓 및 기타 장면의 상황변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재무의 건전성 종합평가

가. 평가항목

- 경영의 적정성 평가
 - * 방송평가의 평가척도(중앙 지상파방송 측정척도) 준용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의 4개 재무비율에 대해 5등급 평가	5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의 4개 재무비율에 대해 각 12.5점씩 총 50점 배점함
- 해당 연도 1개년도의 재무비율만을 평가대상으로 함(단, 증가율의 경우 전년도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무비율을 평가대상으로 함)
- 4개 재무비율 산정 방식: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전 산업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σ)를 구하고, 평균 $\pm 0.5, 1$ 표준편차에 따른 구간별 점수를 이용하여 평가함
 - 이에 따라 점수배점 구간을 5개 구간(12.5점, 10점, 7.5점, 5점, 2.5점)으로 나누어 평가함

구성원 재교육 참여 및 활성화 평가

가. 평가항목

- 경영의 적정성
 - * 방송평가의 평가척도 준용

나. 배점방식

-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 ‘1인당 교육비’, ‘직무능력 향상 교육시간’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함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	-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에 대한 5구간 평가(20점)	80점
교육 참여율	- 직원 수 대비 교육 참여 횟수에 대한 5구간 평가(20점)	
1인당 교육비	- 전체 교육비 대비 인원수를 나눠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여 5구간 평가(20점)	
직무능력 향상 교육시간	- 직무능력 향상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한 5구간 평가(2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20점)
 - 지역방송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을 산출하여 최고점을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함
- 교육 참여율(20점)

- 전체 직원 수 대비 내부 및 외부 교육 참여 횟수의 비율을 산출한 후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여 5개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함

○ 1인당 교육비(20점)

- 전체 교육비 대비 인원수를 나눠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한 후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여 5개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함

○ 직무능력 향상 교육시간(20점)

- 각 지역방송 사업자의 직무능력 향상 관련 교육시간을 파악하여 최고점을 기준으로 5구간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함

※ 산정표

1. 매출액대비 교육비 비율

평가등급의 비율 (5등급)	배점(20점)
75% 이상	20점
50% 이상 ~ 75% 미만	15점
25% 이상 ~ 50% 미만	10점
25% 미만	5점
0%	0점

2. 교육 참여율

평가등급의 비율 (5등급)	배점(20점)
75% 이상	20점
50% 이상 ~ 75% 미만	15점
25% 이상 ~ 50% 미만	10점
25% 미만	5점
0%	0점

3. 1인당 교육비

평가등급의 비율 (5등급)	배점(20점)
75% 이상	20점
50% 이상 ~ 75% 미만	15점
25% 이상 ~ 50% 미만	10점
25% 미만	5점
0%	0점

4. 직무능력 향상 교육시간

평가등급의 비율 (5등급)	배점(20점)
75% 이상	20점
50% 이상 ~ 75% 미만	15점
25% 이상 ~ 50% 미만	10점
25% 미만	5점
0%	0점

제작인력 평가

가. 평가항목

- 경영의 적정성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배점
프로그램 제작 인력비율 (프로그램 제작 종업원 수 / 전체 종업원 수)	5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프로그램 제작 인력비율의 산정

- 해당 연도 1개년도의 프로그램 제작 인력비율만을 평가항목으로 함

$$\begin{array}{l} \text{연도별} \\ \text{프로그램} \\ \text{제작} \\ \text{인력비율} \end{array} = \frac{\text{프로그램 제작 정규직 종업원 수} \times 80\% + \text{프로그램 제작 비정규직 종업원 수} \times 20\%}{\text{정규직 종업원 수} \times 80\% + \text{비정규직 종업원 수} \times 20\%}$$

- 프로그램 제작 인력은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표기된 대로 방송직 종사 근무자로서 기자, PD, 아나운서, 제작 관련 기타직을 의미함
- 프로그램 제작인력 비율 산출 후 9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함
- 정규직의 요건

- (1) 인사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었을 것, (2)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3) 전일제 근로조건(주당 36시간 이상 근무)일 것, (4) 계속근무가능자*일 것

* 계속근무가능자 : 계속근무불가능자가 아닌 자 / 계속근무불가능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으로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없이도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자

- 비정규직의 요건 :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해당 방송사가 4대 보험을 지급하는 계약직을 의미)

※ 산정표

평가등급의 비율 (9등급)	배점(50점)
87.5% 이상	50점
75% 이상 ~ 87.5% 미만	43.75점
62.5% 이상 ~ 75% 미만	37.5점
50% 이상 ~ 62.5% 미만	31.25점
37.5% 이상 ~ 50% 미만	25점
25% 이상 ~ 37.5% 미만	18.75점
12.5% 이상 ~ 25% 미만	12.5점
12.5% 미만	6.25점
0%	0점

자체심의 및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제도 운영 종합 평가

가. 평가항목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공정성 관련 자율 규제 등을 평가
 - * 방송평가의 평가척도 준용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배점 (50점)
전담부서 설치여부	- 설치 만점/ 미설치 0점	10점
제작물 심의비율	- <표1> 참조	5점
제작진 참여여부	- 미참여 만점/참여 0점	5점
방통위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	- <표2> 참조	15점
공정성(허위과장)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운영	<표3> 참조	15점

-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물 심의비율, 제작진 등의 심의 참여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비율, 공정성(허위과장) 관련 자율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 등을 평가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각 항목별(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여부, 제작물 심의비율,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심의제재 사전지적비율 등) 평가 점수 합산
 - 심의제재 사전지적 비율은 사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심의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문제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

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

〈표 1〉 제작물 심의비율에 따른 점수표

80%이상-100%	6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20%이상-40%미만	20%미만
5점	4점	3점	2점	0점

〈표 2〉 심의제재결과 중 사전 지적 비율에 따른 점수표

80%이상-100%	6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20%이상-40%미만	20%미만	0%
15점	12점	9점	6점	3점	0점

※ 수중계 프로그램 제외

〈표 3〉 공정성(허위과장) 관련 자율 규제 제도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점수표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의 구성 여부	제도의 운영결과			
	운영결과 上	운영결과 中	운영결과 下	운영결과 없음
5점/0점	10점	6.5점	3점	0점

-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라 함은, 기존 시청자위원회와는 달리 공정정보도(허위과장) 이슈를 다루기 위해 방송사 내부에 별도로 구축된 조직 또는 회의체로, 방송사 내부 구성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 자율규제 제도의 운영결과는, 운영결과의 정리, 전기 논의결과의 반영, 차기 일정 등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수한 것으로 보며, 동일 사업자군의 우수 사례를 기준으로,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 평가 실시(차등 점수 부여)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

가. 평가항목

- 지역사회 기여도
 -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에 기여한 활동 내용(정성) 및 기여 금액(정량)
 -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실적 (참여횟수 및 수주 및 발주 금액)
 - 지역대학 출신 고용비율

나. 배점방식

- ‘정량평가’의 경우, 최고점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점함

평가척도	배점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기여 활동	활동내용(정성)	20
	기여 금액(정량)	20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참여횟수	10
	수주 및 발주 금액	20
지역 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		20
합계		90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기여 활동
 - (정량평가) 회계 상 기부금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용 금액

- (정성평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에 기여한 활동내역

※ 웨딩, 미술전시회 등의 수익사업은 평가 시 제외함

○ 지역 내 프로그램 제작관련 업체 및 기관 등과의 협력

- '제작관련 업체'는 독립제작사, 지역 순수 제작기업 등 방송사가 위치한 지역 내 영상제작 업체로 정의함

- '기관'이란 대학,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방송사가 위치한 지역 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함

- '지역'이란 해당 방송사가 소재한 곳을 중심으로 9개 권역을 의미함

※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충남·세종/인천·경기도/충북/전북/강원 /제주 등 9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 '참여 횟수'는 프로그램(초방 기준) 편당 횟수를 의미함

- 연간 또는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초방 기준) 편당 1회로 산정함

- 광역 소재 방송사와 비광역 소재 방송사로 구분하여 소재 방송사 집단별로 상대 평가함

○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 평가

- '지역대학 출신 고용비율'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점

- 지역대학의 개념적 정의: 해당 방송국이 소재하고 있는(행정구역상) '도 단위' 소재 대학을 의미함(도 지역 내 광역시 포함)

- 지역대학 출신(전문학사 또는 학사취득자) 고용비율의 산정

$$\text{지역대학 출신고용비율} = \frac{\text{지역대학 출신 정규직 종업원 수} \times 80\% + \text{지역대학 출신 비정규직 종업원 수} \times 20\%}{\text{정규직 종업원 수} \times 80\% + \text{비정규직 종업원 수} \times 20\%}$$

- 정규직의 요건

- (1) 인사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었을 것, (2)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3) 전일제 근로조건(주당 36시간 이상 근무)일 것, (4) 계속근무가능자*일 것

* 계속근무가능자 : 계속근무불가능자가 아닌 자 / 계속근무불가능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으로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없이도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자

- 비정규직의 요건 :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

(해당 방송사가 4대 보험을 지급하는 계약직을 의미)

※ 산정표

1. 20점 배점 항목

평가등급의 비율 (5등급)	배점(20)
75% 이상	20점
50% 이상 ~ 75% 미만	15점
25% 이상 ~ 50% 미만	10점
25% 미만	5점
0%	0점

2. 10점 배점 항목

평가등급의 비율 (5등급)	배점(20)
----------------	--------

75% 이상	10점
50% 이상 ~ 75% 미만	8점
25% 이상 ~ 50% 미만	6점
25% 미만	4점
0%	0점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가. 평가항목

- 재난방송/예방 프로그램 편성실적 교육실적 등 9등급 상대평가
 - * 방송평가의 평가척도 준용(방송평가 60점 배점을 3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적용)

나. 배점방식

평가척도	세부기준	배점 (30점)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 재난방송의 편성 실적에 대한 9등급 평가	6점
	- 재난피해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에 대한 9등급 평가	4점
	- 재난방송 실시율에 대한 5등급 평가	6점
재난방송 매뉴얼의 적정성	- 자체 제작된 재난방송 매뉴얼 마련 여부(매뉴얼 마련 시 만점 / 없는 경우 0점)	4점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여부 (관련 인력 운영 시 만점 / 미운영시 0점)	6점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에 대한 5등급 평가	4점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 시정조치 비율	-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을 시정 조치한 비율을 5등급 평가(<표1> 참조)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거함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평가방식 : 비교평가 대상군(群)*의 실적에 따라 5등급 또는 9등급 상대평가
 - * 비교평가 대상군(群) : 지역MBC, 지역민방

- ※ 극단치(Outlier)의 값(평균+3×표준편차)을 갖는 사업자는 제외

- 재난방송 편성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총 편성시간 량으로 평가
 1. 재난발생시 혹은 재난발생 전후 정규 프로그램과 별도로 편성한 속보/특보 등의 특집프로그램 방송시간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시간도 포함)
 2. 정규 뉴스 프로그램 내에서 방송한 재난관련 보도시간

- ※ 단순 사고나 사건 등은 재난에 해당되지 않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참조)
- ※ 영상을 포함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자막방송 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 ※ 자막방송 실적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설정
- ※ 수중계가 없는 독립지역방송사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재난방송 건수의 차이를 반영하여 편성실적 산정 시 가중치 적용

- 재난피해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실적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제작/방영된 캠페인 등을 의미함
- ※ 재난관련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모든 다큐멘터리는 재난방송 편성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 재난방송 실시율이라 함은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 요청건수 대비 재난방송을 실시한 비율을 의미함

- 재난방송 관련 인력 운영여부는 전임 또는 겸임(재난방송 업무와 타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으로 재난방송 업무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 재난방송 관련 교육 실적은 재난방송 매뉴얼 교육 및 재난 예방과 대응 요령 등에 대

한 직원교육 실적을 교육 시간량에 의거하여 평가 (온라인 강의실적 제외)

-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직원을 참여시키거나 전문 강사의 초청강연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할 경우도 교육실적으로 인정

※ 민방위 비상소집, 예비군 종합방호훈련 등 재난방송의 제작·편성 또는 송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직장 내에서의 비상훈련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한 비율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요구한 시정조치 건수 대비 시정건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기준은 <표 1>과 같음

<표 1> 방송재난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 시정 조치 비율 평가 기준

비율	100%	80%이상	60%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0점

※ 대상 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름

<p>※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p>
--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제1호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가. 평가항목

- 시청자위원회 운영, 시청자위원 만족도 등 평가
 - * 방송평가의 평가척도 준용(방송평가 30점 배점을 5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배점 (50점)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개최 만점/미개최 0점	5점
회의록 공개 여부	- 공개 만점/비공개 0점	5점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여부	- <표1> 참조	10점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여부	- 시한준수 만점/위반 0점	10점
시청자 위원회 운영 만족도 평가	- 운영의 충실성, 의견반영 정도 등	20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활용비율	80% 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40%이상	40%미만 20%이상	20%미만	없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방통위에 매월 보고한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월간 운영실적 보고시한(매월 20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는 0.5점씩

감점(최대 5점)

- 시청자위원회 운영 만족도 평가는 각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위원에게 설문조사한 값의 평균치 사용. 이 때, 설문지 내용은 운영의 충실성, 의견 반영 정도 등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점수는 5점 척도를 사용함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

가. 평가항목

- 시청자 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의견 반영결과 등 종합평가
 - * 방송평가의 평가척도 준용(방송평가 40점 배점을 7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나. 배점방식

구분	세부기준	배점 (70점)
시청자 의견반영 전담부서 설치 여부	- 설치 10점/ 미설치 0점	17.5점
의견반영 결과정리 제출여부 및 평가	- 제출 5점/ 미제출 0점 -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17.5점
의견반영 결과정리 공개여부	- 전문공개 10점/공개열람 8점/ 요약본 공개 5점/ 미공개 0점	17.5점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처리 결과에 따른 감점	17.5점

다. 평가점수 산정기준

- 의견반영 전담부서의 경우, 시청자 의견 접수 처리 등과 같은 관련업무의 분장이 직제 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의견반영 결과정리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보고서 등을 의미함
 - 결과정리는 시청자 의견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의미하며, 홈페이지 Q&A의 갈무리 등은 결과 정리로 인정하지 않음
 - 시청자 의견의 분류, 내용 정리, 사례 제시, 검토 결과(시사점) 등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수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자군의 우수 사례를 기준으로, 그 정도에 대한 상대적 평가 실시(차등 점수 부여)

- 의견반영 결과정리 공개여부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사내 열람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미공개로 간주. 또한, 공개한 경우라도 공개수준(요약본 공개, 전문공개)에 따라 차등 평가함
 - 다만,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전문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외부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회 도서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한 경우, 공개열람으로 간주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의견처리의 적절성 평가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건당 감점 처리
 - 주의 1점
 - 경고 2점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점, 병과 시 6점
 - 시정명령 8점
 - 과징금 부과 10점